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여 개국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 활동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1. 3. 국제앰네스티 발간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 Amnesty International 2011

문서번호: ACT 50/001/2011
원문 언어: 영어

2011. 3. 2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번역 출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재판매가 아닌 경우 캠페인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모든 방법으로 재생산할 수 있음.
국제앰네스티는 영향력 평가의 목적상 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다른 경우의
복사나 다른 출판물에서의 재사용, 번역·번안의 경우
사전에 서면 허가를 출판자로부터 득해야 하며,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 사용 허가 등 모든
문의는 copyright@amnesty.org로 문의 바람.

표지 및 후면 사진: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가
제작한 영상 자료 중 여러 처형 방법을 형상화한
양초로 만든 사람이 녹고 있는 모습. 이 영상의
스틸컷 포스터는 2010년 세계사형반대의 날에
파리 지하철에 전시되었다.
© TBWA/Paris

amnesty.or.kr

목 차

보고서를 발간하며.....	4
2010 년 세계 사형제도 현황	6
전세계 수치	6
전세계적 사형제도 폐지 추세.....	7
사형존치국: 국제법과 국제기준 위반 사례.....	9
사형제도 폐지 연기와 방해	9
'가장 중한 범죄'에 한정된 사형제도	10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확대	11
불공정 재판	12
미성년에 대한 사형	12
지역 현황	14
미주 지역.....	14
아시아-태평양 지역.....	16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	22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2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30
부록 I: 2010 년 보고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현황	36
부록 II: 2010. 12. 31. 현재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현황	37
부록 III: 2010. 12. 31. 현재 사형제도 관련 국제조약 비준 현황.....	39
부록 IV: 2010. 12. 21.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5/206 호에 대한 표결 결과	41
미주	42

기호 풀이

본 보고서에 나온 각종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 숫자가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어떤 국가는 의도적으로 사형제도 관련 사법 절차를 은폐하며 또 어떤 나라는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라 이름 뒤 숫자와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숫자가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숫자 없이 "+"만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한 건 이상) 사형을 선고했거나 집행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보고서를 발간하며

1961년에 출범한 이래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의 처형을 막기 위해 탄원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의 활동은 더 확대됐다. 사형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자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 하에,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을 예외 없이 반대한다. 우리는 범죄의 성격이나 가해자의 특성 또는 사형 방법을 불문하고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부터 전세계적 사형 폐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단 16개국뿐이었다. 30년이 이상이 지난 후, 139개국이 법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현재 58개국이 사형을 존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그보다 더 적다.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사형폐지를 향한 진전은 상당했다. 이 기간 30여 개국이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2010년에도 지속됐다.

2010년 새해가 밝아오자마자 우리는 국제앰네스티 몽골지부 회원들과 축하할 일이 생겼다. 바로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사형 집행에 대한 유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는 사형관련 정보가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자세한 정보가 숨겨져 왔던 몽골에서의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 12월, 유엔총회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3번째로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국가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109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41개국이 반대, 그리고 35개국이 기권했다.

2008년에는 부탄, 키리바시, 몰디브, 몽골과 토고가 '사형제도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화했다. 코모로, 도미니카, 나이지리아, 솔로몬제도과 태국도 2008년에는 반대했으나 2010년에는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 러시아와 마다가스카르는 처음으로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을 반대하는 국가의 수는 2010년에 현저히 줄어 들었다.

이런 진전과 긍정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사형존치국들은 사형을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모두 따른 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과 상반된다.

사형제도 지지 여론이 여전히 강한 나라 대다수에서 고문으로 강제 진술을 받아내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부과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 국가에서 사형은 빈민이나 소수자 혹은 특정 인종, 종족, 종교적 공동체 일원을 대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 사형은 비폭력 범죄, 예컨대 경제범죄나 마법사용, 배교(背教), 마약 관련 범죄 혹은 성인 간 합의된 성 관계 등 "가장 중한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범죄에 대해 사용되곤 한다.

물론 국제법 상 사형제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형존치국들은 인권법과 유엔 인권 관련 기구 모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 예를 들어, 전쟁범죄나 인륜에 반하는 죄, 집단학살과 같은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사법처리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활동은 계속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사형폐지 운동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 회원과 활동가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사형 폐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사형 집행이 임박한 개인들의 사례를 채택하고, 사형제도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례사형현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번 보고서 "2010년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는 2010년에 일어났던 주요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경우) 공식 통계, 비정부 및 정부 간 기구, 인권옹호자, 언론과 현장조사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이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 사용에 대한 세계 현황을 한눈에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앰네스티는 기존 혹은 신규 회원들이 사형제도 반대 행동에 적극 나서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세계적 운동에 동참해 우리의 50주년을 기념하자는 결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세티

2010년 세계 사형제도 현황

전세계 수치

2010년 최소 23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09년보다 네 건 더 높은 수치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 관련 통계를 모니터링 하기 시작한 이래 2009년에는 가장 적은 수의 사형이 집행됐다.¹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세인트키츠네비스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사형을 집행한 바 있었지만 2010년에는 사형을 집행했다는 보고가 없다. 그러나 벨라루스, 바레인, 적도기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², 소말리아와 대만은 한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2010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 최소 52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그런데 이 수치는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있었던 수천 건의 처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사형 관련 통계를 국가 기밀로 삼고 있다. 작년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중국의 최소 사형 수치를 보고서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당국이 매년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 수와 집행 건수를 밝혀 사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당국의 주장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0년 보고된 사형 집행 건수

바레인 (1), 방글라데시 (9+), 벨라루스 (2), 보츠와나 (1), 중국 (수천), 이집트 (4), 적도기니 (4), 이란 (252+), 이라크 (1+), 일본 (2), 리비아 (18+), 말레이시아 (1+), 북한 (60+),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5), 사우디아라비아 (27+), 싱가포르(+), 소말리아 (8+), 수단 (6+), 시리아 (17+), 대만 (4), 미국 (46), 베트남(+), 예멘 (53+).

2010년 67개국에서 최소 2,024건의 사형이 새롭게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최소치이다.

2010년 보고된 사형 선고 건수

아프가니스탄 (100 +), 알제리 (130+), 바하마 (5+), 바레인 (1), 방글라데시 (32+), 바베이도스 (1), 벨라루스 (3), 베냉 (1+), 브루나이 다루살람 (+), 부르키나파소 (1+), 카메룬 (+), 중국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4), 차드 (1), 콩고민주공화국 (+), 이집트 (185), 적도기니 (4), 에디오피아 (5+), 감비아 (13), 가나 (17), 과테말라 (1), 가이아나 (1+), 인도 (105+), 인도네시아 (7+), 이란 (+), 이라크 (279+), 자메이카 (4), 일본 (14), 요르단 (9), 케냐 (5+), 쿠웨이트 (3+), 라오스 (4), 라이베리아 (11), 레바논 (12+),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2+), 말레이시아 (114+), 말라위 (2), 몰디브 (1), 말리 (14+), 모리타니아 (16+), 모로코/서사하라 (4), 미얀마 (2), 나이지리아 (151+), 북한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11+), 파키스탄 (365), 사우디아라비아 (34+), 시에라리온 (1), 싱가포르 (8+), 소말리아 (8+), 한국 (4), 스리랑카 (+), 수단 (10+), 시리아 (10+), 탄자니아 (5+), 대만 (9), 태국 (7+), 트리니다드토바고 (+), 튀니지아 (22+), 우간다 (5+), 아랍에미리트 (28+), 미국 (110+), 베트남 (34+), 예멘 (27+), 짐바브웨 (8), 잠비아 (35).

2010년 말 현재 전세계 17,833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이 숫자는 가용한 부분적 통계를 합산한 최소치이다.

2010년에는 참수형(사우디아라비아), 전기의자형(미국), 교수형(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일본, 말레이시아, 북한, 싱가포르, 수단, 시리아), 독극물주사형(중국, 미국), 총살형(바레인, 벨라루스, 중국, 적도기니, 북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소말리아, 대만, 미국, 베트남, 예멘)이 사용됐다.

투석형에 의한 사형이 집행됐다는 보고는 없으나 이란, 나이지리아의 바우치 주(州)와 파키스탄에서 투석형에 의한 사형이 추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말 기준 이란에서는 최소 10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이 투석형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란,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개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사형제도 사용에 대한 공식 통계를 공개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벨라루스, 중국과 몽골에서는 사형이 여전히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 북한과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베트남의 경우 사형제도 사용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벨라루스, 보츠와나, 이집트,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수나 그 가족과 변호사 모두 사형 집행일을 공지받지 못하고 있다. 벨라루스, 보츠와나와 베트남의 경우, 사형 집행 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알제리, 방글라데시, 카메룬, 쿠바, 이집트, 인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베트남, 예멘과 잠비아에서 사형수가 감형 혹은 사면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사형수 한 명이 무죄가 입증되어 풀려났다.

전세계적 사형제도 폐지 추세

2010년 말 현재 전세계적 사형제도 폐지 추세는 명백하다. 1990년대 중반 평균 40개국 이 매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21세기 초에 들어서 평균 30개국으로 줄었다. 2008년 25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에는 19개국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0년에는 23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 10년 간 법적 혹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 수는 2001년 108개에서 최근 139개로 대폭 증가했다.

전세계 사형폐지 추세와 정부간기구

- 2010년에 G20 회원국 중 4개(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가 사형을 집행했다.
- 아프리카연합 53개국 중 36개가 법적 혹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 2010년에 영연방 54개국 중 4개국(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사형을 집행했다. 영연방 내 사형수는 최소 11,000명이다.
- 2010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중 3개가 사형을 집행했다.
- 2010년에 유엔 회원국 192개국 중 21개가 사형을 집행했다.

2010년 가봉이 법률에서 사형을 삭제했으며, 연말 현재 레바논, 말리, 몽골, 한국 의회에 사형폐지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란 형법 개정안은 2009년 혁명수호위원회에 제출됐고, 2010년 말 현재 아직 논의 중이다. 이 형법 개정안은 제출 당시 투석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하반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안이 몽골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이다. 그리고 12월 6일 키르키즈스탄이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73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두 개 나라가 사형제도 금지를 헌법에 명시했다. 1992년 앙골라 헌법은 이미 사형을 금지한 바 있는데, 2010년에 새로운 헌법 59조를 통해 이를 강화했다. 그리고 2010년 4월 14일, 지부티 의회는 사형을 폐지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에는 사형에 대한 지지 여론이 강한 나라도 사형제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보고됐다. 3월 20일 방글라데시에서는 피의자의 개인 상황이나 해당 범죄의 정황과 무관하게 사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한 7월 30일 케냐의 항소법원도 살인에 대한 사형 의무적 부과 조항은 '헌법의 정신 및 조항과 불일치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10월 가이아나 의회는 살인에 대한 사형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월 10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당사국인 잠비아가 몽구암부투 카브웨 피터 음암바 對 잠비아 사건에서 사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사형을 자동적 그리고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이나 해당 범죄의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며, 생명을 임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자유권규약 제6조1항 위반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유권위원회는 잠비아가 피의자가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에 처하지 않을 권리,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재판 권리 침해로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해당 재판과정에서 박탈됐다고 지적했다.³

2010년 12월 21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제도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제3차 결의안이 채택됐다. 찬성 109표, 반대 41표, 기권 35표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기존 유엔총회 결의 62/149호 및 63/168호를 재확인하면서 다음을 촉구했다. 모든 국가는 △사형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safeguards)를 마련도록 하는 국제 기준, 특히 1984년 5월 25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84/50호 부속서가 명시하고 있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고, 이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 내 토론이 투명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형을 점차 줄여나가고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좁혀나가며, △사형을 폐지한다는 목표 하에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경우 사형을 재도입하지 말 것과 폐지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2012년 67차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 내용의 이행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사안을 2012년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에는 2008년보다 더 많은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부탄, 키리바시, 몰디브, 몽골, 토고가 2008년 당시의 입장을 바꾸고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지지했다. 나아가 코모로, 도미니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솔로몬제도, 태국은 2008년 모라토리엄 결의에 반대했는데 2010년에는 기권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다가스카르와 러시아가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2010년에는 결의안에 대한 반대표 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이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0년 사형제도에 관한 유엔 보고서

전세계 사형의 사용에 대한 유엔의 우려와 사형 제도 폐지 추세를 반영한 세 개의 보고서가 2010년 여러 유엔 기구에 제출됐다.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취합한 것으로서, 이전 '사형제도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의 이행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11월 유엔총회 제3 위원회가⁴ 논의하고 채택했다. 또 하나는 사형제도 및 사형수 권리 보호 안전조치⁵ 이행에 관한 5개년 보고서로서, 2010년 5월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0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15차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⁶로서,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수행하던 몇 가지 인권 관련 사안을 이월 받아 수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들은 전세계 사형 폐지 추세에 주목하면서 사형존치국들이 사형에 있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준수할 것과 사형수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정부간 기구들도 전세계 사형 폐지 추세를 지지하고 있다. 2010년 4월 12 ~ 15일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는 북부 및 서부 아프리카 사형제도에 관한 제2차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인간과 인민의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헌장 선택의정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10년 6월, 아프리카 위원회는 나이지리아 주지사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800명의 사형수들이 낸 청원서를 심사하기로 하면서 내린 조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현황 참조)

유럽의회는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맞아해 사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10년 7월 19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원총회도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0년 10월 7일 스페인 정부는 국제사형반대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는 전세계적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에 대한 전세계적 모라토리엄 도입의 촉진 등이다.

사형존치국: 국제법과 국제기준 위반 사례

사형제도 폐지 연기와 방해

사형제도의 폐지에 있어 진전이 보이고 있는 한편, 사형존치국들은 자신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으며, 자국 내 여론을 따를 뿐 아니라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0년 사형존치국들은 사형제도를 "가장 중한 범죄"에 한해서 자유권규약 6조에 부합되도록 적법절차를 거쳐 사용한다면서 사형제도 사용을 정당화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192개 회원국이 인권 관련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4년마다 평가하는 인권이사회의 제도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반해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다루는 협력적 제도이다. 검토는 인권이사회의 UPR 실무그룹에 의해서 수행되며, 검토 대상 국가 및 그 외 국가 간 상호 대화로 이루어진다. 국가들은 검토 대상 국가에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질의를 하고 행동 권고를 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 및 참관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이 상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NGO 들도 실무그룹 회의에 참관할 수 있으나 발언권은 없다. 사형존치국이 검토 대상인 경우에 정기적으로 사형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사형존치국들은 이런 UPR 과정에서 국제법을 인용하면서 자국의 사형제도 운영을 정당화하곤 한다.

1966년에 유엔총회가 채택한 자유권규약은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과 사형 선고시 준수해야 할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규약 제6조1항에는 "고유한 생명권"이 언급되어 있고, 제6조2항에는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이 명시적으로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6조6항은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않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에서 상기 6조가 "사형 폐지를 지향해야 함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폐지를 의미한 것"이라고 하면서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는 생명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진전으로 간주해야 한다"⁷ 라 하고 있다. 사형존치국들은 이 규약의 6조를

원용하여 사형을 정당화하곤 하는데, 이는 6항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6조 자체의 목적과 목표를 저해하는 것이다.

'가장 중한 범죄'에 한정된 사형제도

많은 사형존치국들이 국제법 상 '가장 중한 범죄'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 및 집행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6조2항이 명시한 사형의 사용을 '가장 중한 범죄'로 제한하는 것은 치명적이거나 다른 극단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는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가장 중한 범죄"라는 표현은 사형제도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봐야 한다"⁸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한 범죄'의 범위는 더욱 좁아졌다.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하고 유엔총회가 컨센서스(consensus)로 승인한 '사형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의하면,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이거나 다른 극단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는 의도적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금융범죄나 종교 행위, 양심의 표현⁹, "동의를 성인들 간 성적 관계"¹⁰ 등 비폭력적인 행위 등 사형을 사용할 수 없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사형 선고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¹¹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정부관리의 횡령¹² 등 경제범죄¹³, 마약 관련 범죄¹⁴, 정치범죄¹⁵, 강도죄¹⁶,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납치¹⁷, "배교, 3회째의 동성성교, 불법 성행위 [...] 그리고 폭력에 의한 강탈"¹⁸은 "가장 중한 범죄"로 분류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자유권위원회는 국내외 안보 상태에 따라 모호하게 혹은 주관적으로 규정된 범죄 또는 정치범죄에 대해 사형제도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¹⁹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경제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지 말아야 하며, "반역죄, 간첩활동, '국가에 반하는 범죄' '배신행위'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행위 등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 그리고 "간통, 성매매, 성적 지향 등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²⁰ 사형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이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경우 의무화되어 있다. 2010년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라오스, 리비아, 태국, 아랍에미리트와 예멘에서의 사형 집행과 사형 선고의 상당 부분이 마약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 2010년 12월 **이란**은 마약퇴치법을 개정해 발효시켰다.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불법 마약류(예를 들어 크리스탈 메스)를 늘려 이를 소지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2010년 10월 **감비아** 의회는 2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코카인을 소지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형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12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15차 회기에서 **라오스**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제안한 사형 폐지 권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라오스는 "특히 마약밀매와 같은 가장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형제도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²¹라고 주장했다.
- 2010년 114 건의 **말레이시아** 사형 선고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었다.

- **싱가포르**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가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 2010년 말 기준 **태국** 사형수 708명 중 거의 절반이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다.

"가장 중한 범죄" 범위에서 '**성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제외해야 한다는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여전히 이에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 **이란**의 경우, "기혼 상태에서 간통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투석형 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연말 기준 최소 10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이 투석형에 의해 사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몇 건은 아직 심의 중이며 다른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말 기준 마리암 고르반자데 등 최소 한 명 이상의 여성의 경우, "기혼 상태에서 간통죄"로 애초에 투석형을 선고 받았다가 교수형으로 형이 변경됐다.

- 2010년 말 현재 동성애금지법안이 **우간다**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중된 동성애 범죄"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2010년에도 일부 국가는 정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형제도를 활용했다.

- 2010년 말 현재, **이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중 여성 한 명 등 최소 17명이 정치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들은 모하레베(moharebeh; 신에 대한 적개) 혐의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장단체인 쿠르드자유생명당(PJAK) 등 금지된 쿠르드계 야당의 당원이거나 코말라라는 마스주의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구금 중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사 선임도 금지됐다고 알려졌다. 사형수 중 한 명인 호세인 케즈리는 2011년 1월 15일에 처형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리비아** 대표단은 가중범죄에 사형을 선고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단체나 조직의 결성과 관련된 범죄를 사형으로부터 제외하는 등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좁히려는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로 했다.

많은 국가들이 신성모독죄나 기타 비폭력적인 표현과 결사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지난 11월 8일 5명의 아이를 가진 기독교인 여성 아아시아 비비가 신성모독죄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사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라호르 고등법원에 이 사건의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확대

지역 및 유엔 기구들은 사형이 폐지된 후 이를 재도입해서는 안되며, 국가들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형폐지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구들은 사형을 재도입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 모두 자유권규약 6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형 폐지 목표에 반한다고 평가했다.²²

그럼에도 2010년에 **감비아**는 사형의 범위를 확대했다. 인신매매, 강간, 강도죄, 2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코카인 소지에 대해서도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3개가 의회를 통과했다.

2010년 11월 **인도** 대법원은 지참금 사망(결혼 과정 또는 이후에 여성이 지참금 요구를 받은 후 비자연적 죽음을 당한 경우)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참금 사망에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모든 법원에 명했는데, 이럴 경우 향후 사형 선고가 증가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우간다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사형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된 상태이다. 또한 감비아, 과테말라, 나이지리아와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의 국가들은 앞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위스의 경우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중적 움직임이 있었지만 얼마 안돼서 철회됐다.

불공정 재판

사형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5항(Safeguard 5 of the 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공정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권한이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을 따라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자는 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소한 자유권규약 14조에 명시된 수준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처럼 명확한 권리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는 불공정한 재판이나 자유권규약 및 '고문이나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CAT; 이하 고문방지협약)'이 공히 금지하고 있는 고문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고 사형을 선고한 사례를 계속 접하고 있다. 2010년,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감비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많은 나라에서 공정 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었다.

- **적도기니**에서는 2010년 8월 21일 4명의 남성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지 한 시간도 채 안돼서 사형당했다. 선고를 받을 때 당사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수감 중일 때에도 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으며 2009년 2월 대통령궁을 습격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당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은 공정 재판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형이 너무 빨리 진행돼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또한 국제법과 적도기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면요청권도 박탈당했다.

- **이란**에서는 재야 세력이나 소수민족에게 불공정한 재판 후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떤 경우 사형수들은 수감 중 고문을 당한 적도 있으며 변호사 접견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부분의 사형이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판을 통해 선고됐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 출신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도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외국인의 경우 비공개적으로 약식으로 사법절차가 이루어질 위험이 높다.

- 2010년 3월 29일 **아랍에미리트** 하급법원에서 17명의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가 파키스탄인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피의자의 모국어인 펀잡어를 할 줄 모르는 아랍에미리트인 변호사가 이들의 변호를 맡았으며, 수감 중 피의자들이 당한 고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재판은 아랍어에서 힌두어로 통역됐는데, 17명의 피의자 모두 힌두어를 못한다.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항소심은 아직 안 열린 상태였다.

미성년에 대한 사형

국제법이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다. 자유권규약 제6조5항은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미성년에 대한 사형 금지가 국제관습법 상 원칙이며, 미성년에 대한 사형금지는 규약의 당사국 되는 과정에서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a 항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에 대한 사형이 이렇게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하마드 A 는 2010년 7월 10일 이란 마르브닷쉬에서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로 사형당했다. 2010년에 이란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와 예멘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피의자들에게 사형을 부과했다.

나이지리아의 사형제도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바로 미성년에 대한 사형이다. 나이지리아의 아동권리법이 미성년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현 사형수 중 20명 이상이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아프리카 아동권리 및 복지 위원회는 샤리아 형법(이슬람 성서에 규정된 의무적 형벌인 하드, hadd 를 포함하여)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사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 2010년 7월 11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나이지리아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이 같은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샤리아 형법에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아예 없고, 특정 국가에서는 아동이 사춘기 기준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샤리아 율법 하에서 미성년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나이지리아가 현재 진행 중인 위헌 심판을 계기로 18세 미만 미성년에게 사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형수의 사건을 재검토할 것, △ 샤리아 형법의 해석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국내법에 18세 미만 미성년에 대한 사형 금지를 반영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도록 할 것, △ 아동의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이지리아가 취한 모든 조치 등 포괄적인 내용을 차기 보고서를 통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²³

지역 현황

미주지역

2010년 미주지역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나라였으며, 46명을 처형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에서 사형 집행 건수는 52명을 처형했던 2009년에 비해 줄었다. 미국에서의 사형 선고 및 집행은 1990년대 절정에 이르렀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최소 110건의 사형이 선고됐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에는 연말 현재 최소 3,200명의 사형수가 있다.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나, 몇몇 사형존치국에서 다시 집행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다. 예를 들어 가이아나 의회는 살인죄에 대한 의무적 사형 선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미국의 경우, 텍사스(17), 오하이오(8), 알라바마(5), 미시시피(3), 오클라호마(3), 버지니아(3), 조지아(2), 애리조나(1), 플로리다(1), 루이지애나(1), 유타(1) 그리고 워싱턴(1)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된다.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몇 개 안 되는 주에서만 사형집행이 있었다. 유타는 1999년, 워싱턴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작년 미주지역 5개 국가 - 바하마(최소 5), 바베이도스(1), 과테말라(1), 가이아나(최소 1), 자메이카(4),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최소 110) - 에서 최소 124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2010년 7월 런던 소재 추밀원(Privy Council)은 2003년 벨리즈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열린 화이트의 형을 감형했다. 추밀원은 피의자가 처한 사회복지적 그리고 정신적 정황에 대한 고려가 선고 당시 없었다는 것이 감형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10년 6월 벨리즈에서 카리브사법재판소법이 발효되면서 벨리즈는 자국의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최종 항소 법원이 더 이상 추밀원이 아니라 카리브사법재판소임을 선포했다. 그러나 임시조치를 도입해 계류 중인 항소심에 대해서는 추밀원이 계속 다루고 있다.

2010년 12월 **쿠바**는 남아 있는 사형수 3명에 대한 형을 감형해 사상 처음으로 사형수가 없어졌다.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이 2008년에 사형수 대부분을 감형시켰는데, 테러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세 명의 형은 감형되지 않았다. 쿠바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2003년이다.

11월, 2000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과테말라**의 알바로 콜롬 대통령이 사형 집행 재개를 막고자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10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대통령 사면 절차 도입을 규정하는데, 이는 2005년 미주인권재판소가 과테말라에 대해 내린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미주인권재판소는 과테말라의 사형수들이 감형 혹은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기에 과테말라가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작년 사형 선고가 한 건 추가됐고, 12월 31일 현재 사형수는 총 13명이다.

2010년 5월 10일, **그레나다**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그레나다는 사형제도가 국내법 상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수십 년 간 집행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밀원의 2006년도 결정에 따라 의무적 사형 선고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토가 끝날 당시

그레나다는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사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10월, **가이아나** 의회는 살인죄에 대한 의무적 사형 선고 조항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정 종류의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여전히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개정되자, 40명의 사형수가 형을 감형시켜달라고 청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아나는 지난 5월 11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가이아나는 사형 폐지를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두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했으며, 이에 대해 2년 후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²⁴

2010년도에 **자메이카**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22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1월 8일, 자메이카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정부 대표는 자메이카가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사형 존치는] 형 선고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극악한 살인에 대해서만 사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선고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선고된다. 자메이카 정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도 생명권 침해도 아니라고 강조했다"²⁵라고 말했다. 자메이카는 1988년 이래 사형을 사실상 유예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형 폐지보다는 오히려 존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자메이카 대표단은 그렇기 때문에 자메이카가 입장을 바꿔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 사용제도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결국 2010년 12월 21일 자메이카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자메이카는 사형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에 **미국**에서 사형수였던 앤토니 그레이브스가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그는 원래 1994년 6명에 대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06년 연방항소법원은 그레이브스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거나 그를 석방하라고 명했다. 해당 주(州)가 그레이브스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 핵심증인인 로버트 카터(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의 진술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재조사한 뒤 그레이브스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레이브스에 대한 공소가 취하됐고, 그는 2010년 10월 27일 석방됐다. 그레이브스는 1973년 이래 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138번째 사형수가 됐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전 대법관인 존 폴 스티븐스는 사형제도에 대해 입장을 바꾼 사람 중 하나이다. 2010년 6월 대법관직에서 은퇴한 후,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35년 동안 재직하면서 자신이 후회하는 판결이 딱 한 번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거의 10년 동안의 사형집행 중단을 깨고 사형집행을 재개시켰던 1976년 '그레그 대 조지아'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손을 들어준 일이었다.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은 판결이 하나 있는데, [...] 그건 바로 사형 제도를 지지했던 일이다. 당시 우리는 그 판결이 향후 어떻게 해석될지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²⁶ 라고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회고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의 이런 입장은 2008년 '베이즈 대 리이스' 판결에 대한 그의 의견에서도 드러났다. 미국 최고 법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얻은 교훈은 사형제도가 잔혹한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내 경험으로 볼 때, 사형 선고는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이루는 데 별반 도움도 되지 않으며 생명을 불필요하게 앗아간다."라며 "국가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처벌은 "과도하고 잔혹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형제도의 잔혹함은 2010년 9월 27일 브랜든 로우드가 조지아 주에서 처형되기 전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로우드의 사형집행일은 원래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날 오전, 두 명의 교도관이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을 상황에서 브랜든 로우드가 면도칼로 자신의 양쪽 팔과 목을 깊이 그어 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병원에 급히 실려갔는데, 의사들은 이미 많은 피를 쏟았기에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다. 상처를 꿰맨 후 살아난 그는 다시 교도소로 옮겨졌다. 9월 21일 오후, 변호사가

브랜든을 접견했을 때, 브랜든은 의자에 몸이 묶인 채 "심각한 통증과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얼굴은 "초취하고 창백했으며, 황달기가 있었다." 자살기도 한 날과 9월 27일 사이 6일 동안 사형 집행이 여러 차례 연기됐는데, 결국 법원은 9월 27일 사형 집행을 강행했다.

이밖에도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미국에서 심각한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거나,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배심원이 선고 단계에서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에 우려를 제기했다.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는 50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홀리 우드**가 9월 9일 저녁 알라바마에서 독극물주사로 처형당했다. 그는 16년 간 사형수로 수감됐다. 선고재판에서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우드의 "지적 기능이 아무리 높게 봐도 정상에 미칠 듯 말 듯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우드의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 장애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세 개 법원의 네 명의 연방 판사들이 1994년 선고 당시 우드가 법적 대리를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50세 인디오계 미국인 **제프리 랜드리건**이 10월 26일 애리조나에서 처형되었다. 그는 체스터 다이어를 살해한 혐의로 1989년에 사형을 선고 받았다. 랜드리건이 과거에 아동학대에 시달리고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것과 그러한 사실이 그에게 미쳤을 영향이 그의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랜드리건의 변호사는 1990년 재판 당시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2007년, 한 은퇴한 판사는 만약 형을 경감시킬 만한 증거, 특히 항소 단계에서 제시된 랜드리건의 정신 건강에 대한 전문가 소견과 같은 증거를 애초에 들었더라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2010년 10월 22일 애리조나 주정부 사면위원회의 사면 심의에서 진술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당시 사면 심의에서 이 판사는 자신의 견해로는 제프리 랜드리건이 종신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진술했다.

2010년 11월 9일, 미국은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 관련 여러 나라가 제기한 권고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이런 권고를 하는 국가를 존중하긴 하나, 이는 국제 인권법의 요구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이기보다 그 동안 지속되어온 정책 상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본다"²⁷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어떤 나라는 사형을 유지하면서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가들이 자유권규약 제6조6항에 명시된 "사형제도 폐지를 연기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다.²⁸

독극물주사형을 집행 때 사용되는 세 가지 약물 중 하나인 티오펜탈 나트륨이 전국적으로 부족해지자 연말로 예정됐던 사형 집행이 몇 건 미뤄졌다. 2010년 말 즈음 미국에서 티오펜탈 나트륨을 유일하게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호스피라가 이탈리아 공장에서 이 약을 계속 생산하는 것과 관련 이탈리아 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다.²⁹ 제프리 랜드리건의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인 10월 25일,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애리조나 주가 밝혀지지 않은 영국의 한 공급처로부터 티오펜탈 나트륨을 구했다고 했다. 사형폐지 단체들의 캠페인이 확산되자 2011년 1월 6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은 기업혁신기술부가 2002년에 제정된 수출통제법 6조에 근거해 미국으로의 티오펜탈 나트륨 수출을 통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겠다고 고등법원에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0년 1월 몽골 대통령이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제도 폐지를 움직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세계에서 사형 집행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태평양 지역 섬나라에서는 사형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2010년 태평양 지역 섬나라에서는 사형선고나 사형집행이 모두 없었다. 아시아태평양 몇몇 국가에서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약 관련 범죄에, 특히 외국인에 대해 사형이 부과되고 있으며, 법적 대리 혹은 적절한 절차 등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제앰네스티는 이 지역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2010년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말레이시아, 북한,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사형에 대한 전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아시아 국가 - 방글라데시(최소 9), 일본(2), 북한(최소 60), 말레이시아 (최소 1) 그리고 대만(4) - 에서 최소 8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정부가 사형에 대한 공식 통계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기 수치들은 최소추정치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처형당한 사람의 숫자는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총 19개 국가에서 최소 805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가니스탄 (최소 100), 방글라데시(최소32),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국(+), 인도(최소 105), 인도네시아(최소 7), 일본(14), 라오스(4), 말레이시아(최소 114), 몰디브(1), 미얀마(2), 북한(+), 파키스탄(365), 싱가포르(최소 8), 한국(4), 스리랑카(+), 대만(9), 태국(최소 7)과 베트남(최소 34)이다.

2009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6개국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2010년에는 사형을 선고한 국가의 수가 증가했다. 사형을 선고했지만 2010년에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한국, 스리랑카와 태국 11개이다.

아프가니스탄은 2년째 사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100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을 받았으나 2010년 말 현재 대통령에게 사면청원을 내놓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8월 **아메리칸사모아**는 경찰을 살해한 한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메리칸사모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39년이였다.

2010년에 **방글라데시**는 최소 9명을 처형하고 3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0년 1월 28일, 5명의 남성이 바로 전날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이 있은 후 13시간 만에 사형당했다. 시에드 화루크 우르 라만, 술탄 사리아르 라쉬드 칸, 모히우딘 아흐메드 그리고 AKM 모히우딘 아흐메단드 바즈를 후다는 방글라데시 건국지도자(현 총리의 아버지)인 쉬이크 무지부르 라만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 네명과 함께 다른 6명도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6명은 망명 중이며 껍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사형을 선고받은 네 명은 질루르 라만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했다. 통상 대통령은 최종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사면 청원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 경우, 네 명의 청원 중 세 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거부됐다.

2010년 2월 다카 소재 국경수비대인 방글라데시 라이플스 본부에서 반란이 일어 7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으로 7월 12일, 824명이 살인, 음모, 살인 교사와 방조, 무기 탈취 및 방화죄로 기소됐다. 만약 이들이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824명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10년 9월 샤후라 카툼 내무장관은 반란에 대해서도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선고 범위를 확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한편 같은 달에 대통령은 여당인 사형수 중 아와미연맹당의 당원과 지지자 20명을 사면했다. 이전 여당이었던 방글라데시민족당 소속의 사비르 아흐메드 가마를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형수들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를 다루기 위해 도입된 신속재판 절차를 통해 지난 2006년에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통령이 사면범위를 방글라데시의 1,000여명이

넘는 모든 사형수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3월 2일, 방글라데시 대법원의 상고법원은 강간살인죄에 대한 의무 사형 선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억압 및 아동착취 방지법' 제6조2항에 근거해 슈쿠르 알리라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고 이에 항의하는 서면 청원이 제출되자 법원이 이를 심의한 후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의무적 사형 선고를 용인하는 모든 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회에 지시했다.

2010년에 **중국**은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범죄에 대해 수 천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제 공정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 후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중국은 사형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0년 1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2007년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국 내에서 선고된 모든 사형 사건에 대한 심사 권한을 되찾게 되면서 검토한 사건 중 약 10%에서 선고가 번복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이후 중국에서의 사형 집행 건수가 약간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엄중히" 선고하되, 유효하고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극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전국 법원에 하달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06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승인한 문서에 처음 언급된 "처벌과 자비 간 균형(justice tempered with mercy)" 정책에 대한 해석도 내놓았다. 이 원칙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자를 엄격히 처벌하되 미성년과 노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며, 살인이나 절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을 제한해야 한다.

2010년 7월 1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公安부, 국가안전부와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새로운 규범이 발효됐다. 이 규범은 사형 사건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조사하거나 진위여부를 판별하고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적 절차를 개선 한 것으로써 형사 사건에서 강제 진술,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를 통해 취득된 증거 등의 불법 증거사용 금지를 강화했다.

지난 8월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발의된 중국 형사법 개정안을 통해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68개 범죄 중 13개가 제외될 수도 있다. 12월 20일, 이 개정안은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임위원회2차 심의를 위해 상정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금 포탈이나 귀중품 및 문화재 밀매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³⁰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비록 지난 몇 년 동안 사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은 범죄를 배제하는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국이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첫 단초이다.

2010년 1월, **간진화**의 사형선고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심사가 진행되었다. 간진화는 두 수녀의 사망으로 이어진 강도 사건으로 2005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경찰이 간진화의 진술을 강제로 받아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그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재판 과정에서 살인무기로 간주된 물건 등 중요한 증거물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사건 당시 간진화가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친척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을 증인 채택하는 것이 거부됐다.

2010년 2월 **왕양**의 사건이 최종 심리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에 회부됐다. 왕양은 "사기를 통한 자금 조달", "사기 대출"과 "감금 중 탈출"로 2003년에 첫 선고를 받았으며 그 이후 여러 법원에서 총 9 차례 재판을 거쳤다. 연말에 최고인민법원이 왕양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있었다. 왕양의 가족은 여러 차례 재판과 재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증거가 제시되는 등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2010년 1월 판키항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조직범죄를 결성하고 이끌며 활동한 혐의"와 "고의 살인 혐의"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 187명의 증인 중 아무도 그 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2월 10일, 판키항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충청시 고급 인민법원은 5월 31일 그의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판키항은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수 차례 고문을 당했고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자백을 강요 받았다고 했다. 2009년 6월 구금됐는데, 그가 교도소로 이송된 2009년 11월이 되어서야 그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접견이 허락됐다. 변호사는 판키항과의 면회를 비밀리 녹화했는데, 판키항이 자신이 받은 고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살기도를 했으며 손목의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 찍혔다. 판키항의 변호사는 이 동영상과 다른 피의자들이 고문에 대해 한 진술을 토대로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를 모두 공개했다. 판키항에 대한 기소는 충청시 조직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스트라이크 하드Strike Hard")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고문 사용과 잘못된 유죄판결 등이 빈번해지자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0년 8월 베이징에서 50명 넘는 변호사들이 충청시에서 발생한 고문 혐의를 조사하라고 최고인민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판키항은 2010년 9월 26일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형 승인 이후 처형됐다.

피지는 지난 2010년 2월 1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답변을 하면서 군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법의 반역죄와 반란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전에 피지는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인도**의 경우 작년 105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해 13명에 대한 사형이 감형됐다. 2010년 2월, 대법원은 사형을 감형할 때 고려해야 할 감경요소들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매우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8월 19일 인도 정부는 납치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1982년 제정된 납치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0년 11월 22일 라즈비르 @ Raju & Anr 대 하리아나 주 재판에서 인도 대법원은 지참금 사망(결혼 과정 또는 이후에 여성이 지참금 요구를 받은 후 비자연적 죽음을 당한 경우)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참금 사망에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모든 법원에 명했는데, 이럴 경우 사형 선고가 증가할 수 있다.

2010년에 **인도네시아**는 2년 연속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2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7명이 감형되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마약 관련 범죄로 3명의 외국인 등 7명이 추가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연말 현재 최소 120여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사형수는 102명이다.

2010년 7월 28일 **일본**에서 2명이 갑자기 처형됐다. 사형집행영장에 서명을 한 사람은 케이코 치바 당시 법무장관이었다. 치바 전 장관은 일본 의회 내 사형폐지론자 모임의 일원이었다. 케이코 치바 장관은 사형 집행을 직접 참관한 후, 처벌의 한 방법으로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법무부 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8월 27일, 법무부 장관은 동경교도소 사형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0년 7월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케이코 치바 전 장관은 재선에 실패했지만 2010년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다. 9월 17일, 미노루 야나기다가 새로운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 임명 직후, 야나기다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중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1월 22일 그는 장관직에서 사임했으며, 요시토 센고쿠 내각관방장관이 새 법무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내무장관직을 겸임하겠다고 했다. 12월 30일 NHK 방송에 따르면, 센고쿠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치바 전 장관이 만든 위원회가 2011년에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서 2010년에 14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으며 2010년 12월 31일 현재 111명의 사형수가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2010년 5월 4일, **라오스**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정부 대표단은 사형제도가 "특히 마약밀매와 같은 가장 극악하고 중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치하고 있긴 하지만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라오스는 지난 수 년 간 모라토리엄을 유지해왔으며, 향후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형법 개정을 고려하겠다"³¹고 말했다. 그러나 12월 인권이사회 15차 회의에서 라오스는 5월 정례인권검토 당시 다른 나라들이 제기한 사형폐지 권고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오스는 "특히 마약밀매와 같은 가장 중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형제도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라오스는 "자유권규약 당사국으로서 현 형사법에 명시된 범죄의 범위가 자유권규약 제6조에 부합하는 여부를 검토하겠다"³²고 했다.

2010년 11월 3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몰디브**는 늦어도 2011년 3월 인권이사회 16차 회의까지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사형 폐지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채택에 대한 권고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로 했다.

2010년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에서 최소 한 차례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최소 114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에 내려졌으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살인에 적용됐다. 두 경우 모두 사형 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2010년 1월 14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사형을 궁극적으로 폐지한다는 목표 하에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대통령은 "민주적 몽골은 깨끗하고 피를 흘리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한다" 제목의 연설에서, 2009년 5월 집권한 이래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한 바 없다고 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2009년 6월 이후 임기 동안 사면을 청원한 모든 사형수에 대해 감형을 단행했다고도 말했다. 2010년 말 현재 몽골은 국가기밀법과 국가기밀목록법에 의거해 여전히 사형을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 선고나 집행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 과거에 사형수의 가족은 사형집행일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사형 이후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09년 6월 몽골에서의 사형수는 최소 9명이며, 2009년 10월 현재 그 중 3명이 감형을 받은 상태였다.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안이 몽골 대쿠랄(몽골 의회) 춘계 정기 회의에 제출됐다. 몽골 대표단은 2010년 11월 2일에 진행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를 논의했으며, "만약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국가기밀법을 포함해 사형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³³고 말했다. 2010년 말 현재, 이 법안은 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에 **북한**에서 최소 60여명이 처형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국내법 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형은 보통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파키스탄**에서는 2년 연속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파키스탄의 길라니 총리가 지난 2008년 6월 21일 의회에서 모든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해야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사형수는 무려 8,000명에 달한다.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은 테러리즘이나 반국가 행위에 대한 사형을 제외하고 모든 사형에 대한 집행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2010년 8월에 선언했다.

파키스탄에서 최소 356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 이 중 대다수는 남성에게, 7건은 여성에게 그리고 한 건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선고됐다. 5명의 아이를 가진 기독교인 여성 아아시아 비비는

신성모독죄로 지난 11월 8일 불공정 재판을 받은 후 사형을 선고 받았다. 비비는 구금 중 그리고 재판 마지막 날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남편 아쉬크 마시는 아내가 신성모독죄라는 "거짓된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09년 6월부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라호르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여전히 주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로 외국인이 마약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작년에 최소한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10년 5월 14일 항소법원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용브이콩이 2009년 1월에 선고받은 의무적 사형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용브이콩은 19살 때 다이아모르핀(헤로인) 47그램을 밀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³⁴

2010년 11월 16일 영국인 기자이자 "한때 즐거웠던 교수형 집행인: 피고석에 앉은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Once a Jolly Hangman: Singapore's Justice in the Dock)"의 저자 알런 샤프드레이크가 싱가포르의 사형 관련 법과 적용되는 방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6주 징역형에 2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 한국에서 4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3월에는 이귀남 법무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2010년 10월에 이 계획은 잠정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왕칭평 법무부장이 2010년 3월에 사임하자 전세계 이목이 대만의 사형제도에 집중됐다. 임기 동안 왕칭평 부장은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며 사형집행명령 서명을 거부했다. 3월 쩡융푸가 법무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4월 30일 창천홍, 흥첸야오, 코시밍, 창웬웨이 가 처형됐다. 쩡융푸 부장이 궁극적으로는 사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이었다.

2010년 5월 28일,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44명의 사형수를 대변해 제출된 청원서 심의를 기각했다. 이 44명의 사형수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중 4명은 이미 사형당했다. 이 청원서는 대만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10월 15일 법무부는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해 사형제도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록 테스크포스팀이 "대다수 대만인이 사형을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³⁵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는 법무부장이 사형을 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국민적 합의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체 처벌 수단"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사형폐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2010년에 **태국**에서 사형이 집행됐다는 보고가 없으나 7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 교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사형수는 708명이며, 이 중 65명은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았다고 했다. 708명 중 거의 절반이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369명은 살인 및 기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의 경우, 사형에 대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집행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0년 베트남에서 최소 3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보고가 있다. 2010년 6월, 베트남 의회는 총살형을 독극물주사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1년 7월부터 개정된 법이 발효된다.

2월 23일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는 제4차 사형폐지 세계총회 때 비공식회의를 개최했다.

ADPAN 구성원이 25명 넘게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주최한 "아시아: 모라토리엄과 폐지를 향한 법적인 경로" 원탁회의에서 인도, 대만과 인도네시아 회원들이 발언을 했다.

2010년 ADPAN은 일본, 몽골, 싱가포르, 한국과 대만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동을 취했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용브이콩을 지지하기 위해 용브이콩의 변호사 주도로 캠페인을 진행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ADPAN회원단체인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은 순회강연을 진행했다. 2010년에 ADPAN에 새로 가입한 회원 다섯이 추가되어 구성원의 수는 아시아 전역 23개국에서 50개 단체 및 개인을 넘어섰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

2009년은 유럽과 구소련 국가에서 처음으로 단 한 차례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은 해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벨라루스 당국은 바실리 유제프추크와 안드레이 추크 두 명의 머리 뒤에서 총을 쏘아 사형을 집행했다.

2010년 3월 19일, 안드레이 추크의 어머니는 두 명의 사형수가 수감된 민스크에 있는 교도소에 음식을 넣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음식 반입을 거부했으며, 어머니는 두 남성이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다시는 아들을 찾아오지 말고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3월 22일 오전, 안드레이 추크의 어머니는 한 교도관으로부터 아들과 바실리 유제프추크가 총살당했으며,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2010년 10월 어머니는 벨라루스 당국이 아들의 시신을 인도하지도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종교를 표현하고 실천할 권리를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벨라루스에서 3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 2009년 10월 그로드노시의 어느 아파트에 대한 무장 강도질 중 발생한 범죄로 2명이 2010년 5월 14일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두 명은 고의적 살인, 무장 폭력, 방화, 미성년 납치, 절도와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0년 9월 20일 벨라루스 대법원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이 두 명은 루카셴카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했다. 2010년 말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청원은 계류 중이며, 또 다른 한 명은 2010년 9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10년 5월 12일 벨라루스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벨라루스 대표단은 사형을 매우 드문 경우에만 사용하며, 사형폐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 내 실무그룹을 만들었다고 했다. 벨라루스는 사형의 적용을 제한하는 최저기준을 존중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또한 안드레이 추크와 바실리 유제프추크의 사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를 검토하고 9월 인권이사회 제15차 회의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기로 했다. 몇 개월 후, 벨라루스는 인권이사회에 그러한 권고이행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이 사안에 대해 실시한 1996년도 국민투표 결과로 인해 벨라루스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3월 두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이미 모든 것을 공개했으며, 사형을 집행한 기관은 법에 따라 선고를 내린 법원에 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법원이 이를 친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형이 집행된 사실을 그 외 조직이나 개인에게 통보할 의무를 법이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³⁶

사망자를 야기한 테러리즘 행위나 전쟁 시 가한 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은 2010년 2월 12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카자흐스탄 대표단은 점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2003년 12월 19일에 선포한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2010년까지 지키고 있다.

2007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키르기즈스탄**은 2010년 12월 6일 사형폐지를 목표로 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172명에 대한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된 상태이다.

2010년 3월에 발생한 테러 사건 후, 보리스 그리즐로프 두마(러시아 의회) 의장은 **러시아**가 사형폐지를 다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를 아직은 비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선포한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연장된 이후, 2009년 말 기준 697명에 대한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된 상태이다.

타지키스탄은 2004년에 선포한 사형 선고 및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2010년에도 준수하고 있다. 2010년 4월, 이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공화국 사형폐지의 사회적 및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 실무그룹'을 신설하여, 집행 및 사법 당국 주요 관리들과 타지키스탄의 옴부즈맨 기구 관련자들도 배치했다. 사형 문제를 다룬 10월 5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2010년도 평가회의에서 이 실무그룹의 의장이자 대통령의 사법정책 자문인 유마훈 다블라토프는 "우리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사형 선고 및 집행 수는 2009년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사형이 불공정한 재판 후에 사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으며,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마약밀매나 간통 등의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었다.

최소 378명이 바레인(1), 이집트(4), 이란(최소 252), 이라크(최소 1), 리비아(최소 18),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5), 사우디아라비아(최소 27), 시리아(최소 17), 예멘(최소 53) 등 9개 국가에서 처형됐다.

최소 748명이 알제리(최소 130), 바레인(1), 이집트(185), 이란(+), 이라크(최소 279), 요르단(9), 쿠웨이트(최소 3), 레바논(최소 12), 리비아(+), 모로코/서사하라(4),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최소 11), 사우디아라비아(최소 34), 시리아(최소 10), 튀니지아(최소 22), 아랍에미리트(최소 28), 예멘(최소 27) 등 16개 나라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알제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모로코/서사하라, 튀니지아와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사형집행은 실시하지 않았다.

바레인은 2010년에도 사형을 사용했다. 2007년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방글라데시 출신의 자심 압둘마난이 2010년 7월 8일 총살형에 처해졌다. 2010년 말, 바레인 대법원은 또 다른 방글라데시 국적의 러셀 메잔의 사형선고를 확정했으며, 피의자는 파기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집트는 2010년에도 사형 선고 및 집행을 이어갔다. 사형수와 가족, 변호사들은 긴박하게 잡힌 사형집행일을 통보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에 4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185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경우 사형선고는 살인죄에 적용된 것이지만 마약 관련 범죄에도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3월 11일 아테프 로히움 압드 엘 알 로히움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을 당했다. 그의 가족은 2009년 5월 검찰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 그의 가족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이틀 전에 항소 접수 상황에 대해 공식 문의를 했을 당시에 항소 기각을 통보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2010년 2월 17일, 이집트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정부 대표단은 매우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검토 후 이집트는 사형의 사용에 관한 최저 기준을 존중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지만, 사형폐지를 목표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라는 권고는 거부했다.³⁷

2010년 이란 당국은 5명의 여성과 한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총 252명을 처형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마쉬하드의 바킬라바드 교도소에서 대부분 집행된 300건의 비공식적 처형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보고를 통해 알아냈다. 처형당한 대다수는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4명은 공개처형 당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란의 구속자들은 재판을 받기 전 매우 오랜 시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수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은 대부분 불공정하게 진행되며, 수개월 걸릴 수 있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구금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접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밖 지방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몇 분도 채 안 걸리는 등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란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나 국가안보와 관련해 모호하게 기술된 혐의 등 가장 중한 범죄로 분류될 수 없는 행위에도 지속적으로 사형이 부과되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이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모호하게 기술된 혐의인 "신에 대한 적개(모하레베)"혐의는 보통 국가를 대상으로 무장 항거에 나선 이들에게 적용되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이 부과되기도 했다.

10월에 한 남성이 "배교"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연말에 그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12월에는 또 다른 남성이 "포르노"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의 신성함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에 이란에서 마약 범죄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난 10월, 내무장관은 마약밀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같은 달 검찰총장은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 조치에는 모든 마약밀매 사건을 검찰청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2010년 12월 이란의 마약퇴치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마약밀매로 기소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또한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불법 마약류의 범위를 늘려(예를 들어 크리스탈 메스; 필로폰) 이를 소지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마약퇴치법 하에서 일부 피의자들은 검찰총장이 판결을 내리고 형을 확정하게 되므로 항소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2010년 국제앰네스티는 마쉬하드의 바킬라바드 교도소에서 수백 명의 마약밀매자들이 비밀리에 처형당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 처형당한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4월, 아프간인 수 십 명이 이란에서 비밀리에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당국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소 4,000여명의 아프간인들이 주로 마약밀매 혐의로 이란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8월에는 나이지리아인 한 명이 최소 60여명과 함께 바킬라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 처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는 가나인 한 명과 다른 9명이 함께 처형당했다. 두 경우 모두 해당국 대사관이 긴급히 잡힌 사형집행일에 대해 통보 받지 못했다.

2010년, 정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사형당했다. 1월에는 두 명의 남성이 "신에 대한 적개"혐의와 이란 왕정 부활을 주창하는 불법 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불공정 재판을 거친 후 교수형을 당했다. 이 두 명에 대한 사형은 2009년 6월 선거 후 이란 전역에 걸쳐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된 첫 사형집행이었다. 두 사람의 변호사는 사형집행을 통보 받지 못했는데, 이는 이란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2010년 12월 1년 전 사형을 선고 받은 또 한 명의 사형수가 아무런 예고 없이 처형당했다. 금지된 반정부단체인 이란 인민무자헤딘조직(PMOI)에 가입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첩보 행위로 기소된 알리 아크바 시아닷과 함께 교수형을 당했다.

그 외 6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PMOI에 연루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어떤 경우 PMOI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그 조직에 가입한 가족성원을 만나거나 연락한 정도인 경우도 있다.³⁸

이란 내 소수민족에 대한 사형 선고와 집행도 이어졌다.

2010년 말 현재, 제이나드 잘라리안이라는 여성 한 명 등 이란의 쿠르드계 소수민족 17명이 정치 범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금지된 쿠르드계 반정부단체 조직에 가입한 이유로 '모하레베' 혐의를 받아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사형판결을 받았다.

일부 사형수는 구금 중 고문을 당하고 변호사 선임과 접견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 중 한 명인 호세인 케즈리는 2011년 1월 15에 처형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또 한 명인 하비볼라 라티피의 경우, 2010년 12월 26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외의 탄원으로 집행이 연기됐다.

메디 에스라미안과 더불어 4명의 쿠르드인 파르자드 카만가, 알리 헤이다리안, 파르하드 바킬리, 시린 알람-홀리는 테헤란 소재 에빈 교도소에서 지난 5월 9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다섯은 세 차례에 걸친 "테러 행위"로 "신에 대한 적개"혐의를 받았다. 모호하게 규정된 "신에 대한 적개"혐의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통 국가에 대항해 무장 항거하는 경우 적용된다. 메디 에스라미안은 "신에 대한 적개" 혐의로 이미 처형당한 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준 죄로 처형됐다. 에스라미안의 동생은 2008년 4월 시라즈 소재 신전 폭파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란 내 바루치 소수민족 성원인 것으로 알려진 11명은 12월 20일 자헤단 교도소에서 처형당했다. 이란의 파스통신(FNA)에 따르면, 11명은 이란 인민저항운동(PRMI) - 또는 준달라 - 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준달라는 12월 15일 이란 남동쪽 시스탄-바루치스탄에 있는 차바하르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39명을 죽였다고 스스로 밝혔다. 비록 한 지역 법원 관계자가 이들 모두 12월 15일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명 모두 "신에 대한 적개"와 "지상에서의 부패", 경찰 및 혁명수비대에 대한 매복공격과 살해, 시아파 신전 폭파, 납치, 무장 강도 등 여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9년 6월, 이란 의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의회에서 심의 중인 형법 개정안에서 투석형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혼 상태에서 간통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는 투석형 선고가 의무화 되어 있다. 연말 기준 최소 10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이 투석형에 의해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몇 건은 아직 심의 중이며 다른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연말에 마리암 고르반자데 등 최소 한 명 이상의 여성이 "기혼 상태에서 간통죄"로 애초 투석형을 선고 받았다가 교수형으로 형이 변경됐다.

2006년 투석형을 선고받은 사키네 모하마디 아슈티아니의 사건은 2010년 연말에 심사를 거치고 있다. 아슈티아니는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 소수민족 출신이며, 아슈티아니의 사건은 2010년 7월 이래로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제르바이잔 터키어를 사용하며 법원에서 사용하는 페르시아어는 잘 못한다. 그녀의 사건을 심리한 5명의 판사 중 3명이 그녀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아슈티아니는 법원에서 자신이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자백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지식"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사의 지식"이란 명확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판사가 주관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란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2007년 5월, 대법원은 투석형을 확정했으며 사면감형위원회(Amnesty and Clemency Commission)는 그녀의 사면요청을 거부했다. 투석형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일자, 7월 7일 북동부의 타브리즈시 사법 당국 관리들은 테헤란에 있는 이란의 사법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투석형의 교수형 변경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후 여러 이란 관료들이 아슈티아니의 법적 상황에 대한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아슈티아니는 타브리즈중앙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10년 8월부터 자녀와 변호사와의 면회가 불허된 상태다. 아슈티아니의 아들과 변호사 그리고 아슈티아니의 사건에 대해 이 둘을 인터뷰하던 두 명의 독일인 기자까지 지난 10월에 체포됐다. 아들은 12월에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되나 다른 세 명은 연말에도 구금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슈티아니와 그녀의 아들, 아슈티아니의 변호사는 국영 방송사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방송에서 이들이 "자백"을 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는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소년 두 명을 강간한 혐의로 2010년 7월에 처형된 "모하마드 A"는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자가 최근 몇 년 사이 사형을 선고 받은 최소 140명의 목록을 파악했으나 사형이 실제 집행됐는지 여부를 모든 사건에 대해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2010년 7월 4일, 모하마드 레자 하다디의 가족은 사법부 관계자로부터 아들을 마지막으로 면회하라는 말을 들었다. 하다디는 이란 남부의 시라즈에 있는 아델라바드 교도소에서 7월 7일 처형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 하다디는 15세일 때 저지른 살인으로 2004년에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제 약 22세이다. 2005년 7월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으며, 애초에 2008년 10월에 사형될 예정이었으나, 사법부 장관령으로 유예됐다가 2009년 5월 27일로, 그리고 7월 16일로 다시 잡혔다. 후에 사형집행일이 2009년 12월 9일로 다시 조정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도 있었다.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또 다른 한 명으로 알려진 나세르 카세미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변호사들 중 의뢰인의 사형 선고나 집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들 여러 명이 징역형을 받는 등의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다. 변호사인 모하마드 올리야에이팔드는 지난 5월 1일 "체제에 반하는 선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체포되기 전 모하마드 올리야에이팔드는 자신의 의뢰인이자 미성년 범죄자이자 베노우드 쇼자이이의 처형 직후 자신이 페르시아어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쇼자이이는 17살 때 저지른 살인혐의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모하마드 모스타파에이는 2010년 8월 초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란을 떠나야 했다. 간통 혐의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사키네 모하마디 아슈티아니의 사건에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역할 때문이었다. 아슈티아니의 또 다른 변호사 자비드 호우탄 키안은 아슈티아니의 아들과 두 명의 독일인 기자와 함께 체포됐다. 키안은 12월 말 여전히 구금 중이었다.

이란에서 여러 정치수의 변호를 맡은 바 있는 할릴 바라미안은 자신의 의뢰인 파르자드 카만가와 시린 알람-홀리, 두 명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5월 잠시 체포된 적이 있다. 그는 12월에 재판을 받았으며, 2011년 2월 "체제에 반하는 선동", "사법부 장관 모독"과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그의 항소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으며

그는 구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처형당한 사람의 유가족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시신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사람은 교수형에 쓰인 밧줄 값을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가족의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5월 4명의 쿠르드인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이란 당국은 항의하러 테헤란에 온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해주기를 거부했다. **시린 알람-홀리의** 어머니와 누이, 삼촌, 조카와 할아버지는 모두 체포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다. 또한 당국은 마쿠에 있는 가족의 집에 유가족이 모이는 것도 금지시켰다. 네 명의 사형수 중 한 남성의 가족은 카미야란에 살았는데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전화선도 끊겼다.

지난 2008년 '신에 대한 적개'로 사형을 선고 받은 **하비볼라 라티피**의 사형집행이 지난 12월에 연기되자 그의 가족과 활동가들은 라티피의 집에 모였다. 보안요원 50여명의 집에 들이닥쳐 라티피 가족 7명과 그외 17명을 체포했다. 2010년 12월 30일 기준 이들은 각각 2만 1천 미화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였다.³⁹

2010년 2월 15일, 이란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이란은 사형의 사용에 관한 최저 기준을 준수하고 사형과 관련된 자유권규약 및 아동권리협약(CRC)을 지키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특히 정치범죄에 사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공개처형, 미성년에 대한 사형과 투석형 사용을 비판했다.⁴⁰ 12월, 유엔총회는 이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은 이란이 공개처형 등 사형을 많이 집행하고 그 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장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 미성년에 대한 사형 집행, 모하레베("신에 대한 적개") 등 정확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거나 중범죄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 투석형과 목을 조르는 교살형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란은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에 **이라크**에서 한 차례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미컬 알리'라고 불리는 알리 하산 알-마지이드가 2010년 1월 25일 사형당했다. 1988년 할랍자市中 독성가스살포를 지시해 이라크 쿠르드계 소수민족 5,600명을 죽인 사건으로 1월 17일 4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사담 후세인 정부에서 고위급 인사였던 1980년대 당시 내무장관 사둔 샤키르, 미즈반 쿠데르 하디, 아지즈 살리 알 노아만은 1980 ~ 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파일리 쿠르드족(시아파 쿠르드족)을 살해하고 내쫓은 혐의로 2010년 11월 29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2월 3일, 자와드 알-볼라니 이라크 내무장관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39명의 수감자들이 알카에다 관련 조직에 연루된 죄로 2010년 말 처형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말 이들은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는 37명은 연말에 즉각 처형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 사형수는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5월 미드하트 알-마무드 이라크 대법원장이 테러 관련 범죄로 지난 2009년 77명을 사형에 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이라크에서 최소 120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0년 2월 16일 이라크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이라크 대표단은 사형

선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집단학살, 인륜에 반하는 범죄와 테러 행위 등 가장 중한 범죄에만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형이 집행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의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사형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라크 대표단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폐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이를 폐지라는 권고는 거부했다.

요르단 정부는 2010년 말 현재 사형수가 4명의 여성을 포함해 총 46명이며, 작년 최소 6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9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정부에 따르면, 형법을 개정하면서 137/1조(현 정부에 반한 무장 반란 선동)과 372조(사망을 초래한 방화)에 대한 사형 선고를 삭제하면서 2010년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숫자가 줄었다.

2010년 **쿠웨이트**에서 최소 3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노동자 자카티아 파와에 대한 사형 사건이 2010년 1월 쿠웨이트의 국가원수(국왕)에게 제출돼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2007년 5월 14일, 자카티아 파와는 고용주의 22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 내내 자카티아 파와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파와의 변호사는 파와가 살인을 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1월 재판에서 파와는 피해자가 이웃과 바람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 성원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5월 12일 쿠웨이트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정부 대표단은 사형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극악하고 위험한 범죄에 대해만 매우 제한적이고 주의 깊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안전조치를 존중했으며, 모든 단계에서 공정 재판이 보장됐다고 했다. 쿠웨이트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한 사형의 사용에 관한 최저 기준을 준수하고 특히 사형을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용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사형을 폐지하라는 8건의 권고는 거부했다.⁴¹

2010년 **레바논**에서 최소 12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으며, 연말 현재 사형수는 여성 한 명을 포함해 최소 50명이다. 2010년 2월 18일, 레바논 남성 마무드 라페가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적과 협력하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와 2006년 레바논 남부 시돈市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조직원과 그의 형제를 차량폭탄으로 살해한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가 재판을 받기 전 군 정보요원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나머지 한명의 팔레스타인인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궤석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6월 미셸 술레이만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고 이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사형집행 영장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레바논은 2010년 11월 10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는데, 이 때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사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

2010년에 **리비아** 법원은 주로 살인과 마약 관련 범죄에 계속 사형을 선고했으며, 보통 총살형을 사용한다. 차드,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국민을 포함해 총 18명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6월 말에 처형당했다. 2010년 11월 9일 리비아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정부 대표단은 가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1990년 이래 201건에 대해서만 사형이 적용됐다고 했다.

리비아는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포를 고려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또한 늦어도 2011년 3월 인권이사회 16차 회의까지 스톱히 단체나 조직의 결성과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는 등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고, △사형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 하에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적용하고 선고된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며, △자유권규약 제6조를 준수하고 사형제도를 명확히 폐지한다는 목표 하에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라는 권고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로 했다.

2010년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지구의 사실상 행정부인 하마스는 5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가자나 서안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5년이었다. 2009년에 2명의 남성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하고 살인에 가담한 죄로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010년 4월 15일 가자市에서 처형됐다. 또 다른 세 명은 2010년 이전에 각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2010년 5월 18일에 처형됐다. 2010년에 가자지구의 군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최소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서안지구에서는 2010년에 사형 선고나 집행 모두 없었다.

2010년 현재 **카타르**의 사형수는 17명이며 추가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2월 8일, 카타르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와 관련, 특히 사형을 선고할 때 공정재판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나 모든 사형을 감형하고 사형폐지를 목표로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화하라는 권고는 거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소 27명이 처형되었으며, 최소 34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형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됐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 출신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경우 비공개 약식 사법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 도움을 청할 친척이 없이 혼자 타지와 와 있는 외국인의 경우, 현지 언어를 못하거나 지식이 없어 재판 절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향력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에 비해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낮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0월 25일 스리랑카 출신의 22세 여성 가사노동자 **리자나 나피크**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나피크는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나피크의 사건은 국왕의 최종재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상태이다. 나피크는 예심 과정에서나 첫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신문 과정에서 애초에 살인혐의를 "자백"했으나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등 압력을 받아 자백했다며 이후 자백을 철회했다. 나피크의 진술을 통역한 사람은 공인된 통역관이 아니었으며, 타밀어와 아랍어를 제대로 통역할 능력이 없었을 수 있다. 이후 이 통역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다.

2010년, 각각 수단 출신과 레바논 출신인 두 남성은 "마법" 혐의로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다. 수단 출신의 **압둘 하미드 빈 후사인 빈 무스타파 알-파키**는 지난 2007년 3월 27일 마디나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의뢰인의 이혼한 부모를 화해시켜준다는 주술을 썼다는 혐의이다. 알-파키의 재판 과정은 비공개였기에 이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알-파키가 사형을 선고 받은 지 3년이 지난 2010년에도 여전히 그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처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 출신의 **알리 후사인 시밧**은 레바논 위성방송국 세헤라자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영된 TV쇼의 진행자였다. 이 쇼에서 그는 미래에 대한 조언과 예언을 했다. 2008년 5월 이슬람 성지순례인 움라를 수행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시밧은 종교경찰 무타와인에 체포됐다. 시밧은 마법 외 기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적 대리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으며, 2009년 11월 9일 마디나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밧이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그를 양심수라 규정했다.

시리아에서도 계속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최소 17명이 처형당했다. 11월 4일 엘리아자 알-살레, 아흐메드 알-아바스와 마젠 바소우니가 처형당했다. 이들은 시리아에서 통상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처형법인 교수형으로 사형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 모두 알-살레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알-살레가 수 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은 모두 무시됐다. 알-살레의 가족은 사형이 집행된 후 3일이 지나서야 처형 소식을 알게 되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10년에 주로 마약밀매와 살인, 강간 혐의로 최소 28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 됐다. "카울라"라고만 알려진 한 여성과 두 아랍에미리트 국민, 카울라의 애인으로 알려진 파드, 파드의 친구 무크타르 그리고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인 압둘라 후세인이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에서 당장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모두 계획적 살인 혐의를 받았다. 카울라는 범죄 당일 경찰에 자백했으며, 다른 세 명은 다음날 체포됐다. 이 네 명은 샤르자중양교도소에 2003년부터 수감됐다.

2010년 3월 29일, 샤르자의 하급법원은 17명의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주류 거래를 둘러싸고 이주노동자들 간 싸움이 벌어졌고, 이 때 세 명의 파키스탄인은 부상당하고 한 명의 파키스탄인은 사망했다. 인도 NGO인 국제인권변호사회(LFHRI) 소속 변호사들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뒤 4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경찰이 이들 17명을 9일 동안 구금한 채 곤봉으로 때리고, 전기충격을 가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 다리로 서있게 하는 등 고문을 가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그 17명은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의 모국어인 펀잡어를 할 줄 모르는 아랍에미리트인 변호사가 이들의 변호를 맡았으며,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은 아랍어에서 17명이 알아들을 수 없는 힌두어로 통역됐다. LFHRI에 따르면, 구금된 후 수 개월이 지나서야 인도 정부에 체포사실이 통보됐다. 3월 29일, 샤르자 하급법원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4월 14일에 되어서야 판결 내용을 피의자들에게 알려줬다. LFHRI는 샤르자교도소의 교도관들이 한 명 외 모두 시크족인 이들로부터 종교적 의미가 담긴 목걸이와 팔찌를 모두 강제로 빼앗아 "너희 신은 누구냐? 불러봐.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수감자들이 목걸이와 팔찌를 스스로 밟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을 거치고 있으며, 11월에 피해자의 가족 대표가 디야(diya, 보상금) 요구를 제출한 후 차기 심리를 2011년 2월 17일로 잡았다.

2010년, 예멘 당국은 최소 5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고, 최소 2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치명적인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매우 다양한 범죄에 사형이 선고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예멘의 사형제도에 대해,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절차를 통해 사형을 선고한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해왔다. 대통령의 최종재가를 얻은 두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2010년으로 예고되어 있었다. 그 중 한 명인 푸아드 아흐메드 알리 압둘라는 사형 집행 예정일 전날인 12월 18일에 집행이 유예됐으며, 현재 법원이 압둘라의 사건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2010년에 사형을 폐지한 아프리카 국가가 하나 늘어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중 사형폐지국은 총 16개가 됐다. 2009년 국제앰네스티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개뿐인 보츠와나와 수단만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보츠와나(1), 적도기니(4), 소말리아(최소 8)와 수단(최소 6) 4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베냉(최소 1), 부르키나파소(최소 1),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14), 차드(1),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4), 에디오피아(최소 5), 감비아(13), 가나(17), 케냐(최소 5), 라이베리아(11), 마다가스카르(최소 2), 말라위(2), 말리(최소 14), 모리타니아(최소 16), 나이지리아(최소 151), 시에라리온(1), 소말리아(최소 8), 수단(최소 10), 탄자니아(최소 5), 우간다(최소 5), 잠비아(35), 짐바브웨(8) 총 24개국에서 최소 333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이 지역에서 선고된 사형의 수는 2009년에 비해,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증가했다. 서아프리카의 경우 사형 선고 건수가 137건이나 증가했다.

2010년 베냉에서는 23년째 단 한 차례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지만 한 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 2010년 4월, 베냉 정부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 주최로 북부 및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회의를 주관했다. 그 회의에서 베냉 당국은 의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이 사형폐지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다.

2010년 부르키나파소에서 한 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 로마 소재 생에지디오공동체 주최의 제5차 "생명 없이 정의없다" 회의에서 부르키나파소 법무장관은 사형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츠와나의 경우, 사형이 여전히 비밀리에 사용되고 있다. 홍보 담당관인 보츠와나 교정국 라몰레페 교정관은 남아공 출신의 모디세 플라이 모크와디가 2010년 3월 24일 처형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집행 전날 모크와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2008년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받았다.

벤슨 케간네와 남아공 국적의 크곳소 브랜드 삼프슨과 마이클 몰레페는 2010년 말 현재 보츠와나에서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다. 2001년 남아공에 체포되어 보츠와나로 인도되기 전, 남아공 정부는 보츠와나 당국으로부터 이 세 명을 사형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2010년 5월 20일,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확정 판결을 받은 전국 수감자들에 대해 감형을 해주는 대통령령에 2년 연속 서명했다. 이 법령을 통해 사형수들에 대한 감형이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형수의 수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법령 제4조기 1급 살인죄, 가중된 절도죄와 상습 범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감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선고된 사형 사건 대부분 군사 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선고 한 것이다. 2010년 3월 킨샤사의 군사 법원은 인권운동가 피르민 안감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무기를 불법 소지하고 콩고 북동부 지역의 키상가니에서 반란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11월, 콩고 의회는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거부했다.

적도기니에서는 퇴역 군인 호세 아베소 은수예와 마누엘 은동 안세메, 국경수비대원 자신토 미차 모비앙, 민간인인 알리피오 은동 아수무가 2010년 8월 21일 처형됐다.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지 한 시간도 채 안돼서였다. 이들은 2009년 2월 대통령궁이 습격당한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원수와 정부를 공격한 혐의, 반역과 테러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궤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수감 중 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으며, 혐의를 자백하도록 고문당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선고 후 사형집행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피고인들은 항고할 권리와 사면을 요청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는 국제법 및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행위였다.

호세 아베소 은수예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 가족 면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수감된 말라보의 블랙비치교도소에 가족이 도착했을 때, 면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며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었다.

교도소 측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시신을 양도 하지 않았으며, 시신은 사형이 집행된 당일 자정 즈음 말라보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2010년 2월 15일, **가봉**의 폴 비요게 음바 대통령은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10년 2월 10일, **감비아** 인권 상황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실시했다. 사형제도와 관련, 감비아 당국은 살인이나 반역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하고 있긴 하나,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 정부 하에서는 사형을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13건의 사형이 선고됐는데, 이 중 8명은 야히야 자메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를 위해 무기와 각종 장비, 용병을 조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감비아 의회는 2010년 10월, 2007년 제정된 인신매매법과 형사법 122조와 273조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인신매매, 강간과 폭력 절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달, 감비아 의회는 2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코카인을 소지할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말 기준 이 세 법안은 법률을 공포권을 가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2010년 **가나**에서는 17건의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 2010년 1월 11일, 존 에반스 아타 밀스 가나 대통령은 1992년도 헌법을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의 검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사형제도 폐지이다.

2010년 5월 7일, **기니**에서는 새로운 헌법이 대통령령으로 채택됐다. 새 헌법은 사형폐지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니는 2010년 5월 4일 인권이사회에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기니는 사형 집행에 관해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라는 권고와 사형폐지를 고려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 9월 인권이사회 15차 회의에서 기니 대표는 사형폐지에 관한 문제를 전국적 토론에 부치기에는 너무 이르며, 정부는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⁴²

2010년 최소 5명이 **케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10년 7월 30일, 케냐의 항소법원은 살인죄에 사형 선고를 의무화하는 형법 204조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혹은 대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재판을 보장한다는 헌법 조항과 불일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형을 감형받을 기회를 해당 개인으로부터 박탈하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살인죄 사형 의무화 위한 판결의 논리가 반역죄나 폭력 절도죄 혹은 폭력 절도 시도 등 형법에 명시된 다른 중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4일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새 헌법은 26조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사형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2010년 5월 6일 케냐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검토 전 케냐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모든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에 케냐 법률에서 사형을 존치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에 유용하거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시급히 실증조사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오랜 사형수 생활은 정신적 분노, 고통, 심리적 트라우마와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된다'는 사실 인식에 기반한다"⁴³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검토가 끝난 후, 케냐는 사형과 관련된 법률을 계속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나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사형을 폐지한다는 목표 하에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하라는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2010년 5월 5일 **레소토**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사형제도에 관한 사전 질의에서 레소토는

사형을 성문법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존치시키고 있지만 지난 1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⁴⁴

라이베리아 법원은 2008년에 사형제도를 재도입한 이래 사형을 2010년까지도 계속 선고했다. 이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2010년 11월 1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으면서 라이베리아 대표단은 사형 재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베리아는 "지역 및 국제 인권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이며, 모든 인권 관련 의무를 파악하고 법안을 작성할 때 인권 보장의 중요성과 관련 국제 협약 및 규약에 대해 법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책임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이베리아 대표단은 사망자를 야기한 무장 절도나 테러 행위, 비행기 납치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2008년도 법률을 철회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다하라는 권고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인권이사회 제16차 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⁴⁵

2010년 2월 15일 **마다가스카르**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실시됐다. 사형을 폐지하라는 권고에 대해 마다가스카르 대표단은 사형을 즉각 폐지할 만한 조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행정·입법·사법 당국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초기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⁴⁶ 법원의 사형 선고는 2010년에도 지속됐다.

2010년에 **말라위**는 6명의 모잠비크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했다. 모잠비크 당국은 자국 국민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으며 그렇기에 피의자들에게 적절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 말라위는 2010년 11월 1일에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받았다. 말라위는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사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모리타니아**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작년에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세 명의 모리타니아인 **시디 오울드 시드나, 마아로우프 오울드 하이바, 모하메드 오울드 차바르노우**는 지난 2010년 5월 25일 고문을 받으며 강제로 한 자백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10년 11월 10일 모리타니아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모리타니아는 사형제도와 관련 실무그룹이 제시한 권고 중 그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동성애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검토하고 인권이사회 제16차 회의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17일 **니제르** 전국협의회(의회)는 사형을 폐지하려는 대통령의 법령안을 부결시켰다.

2010년 4월 나이지리아의 주지사 36명은 전국국무회의(National Council of State)에서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형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6월 16일 전국경제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 때 나이지리아 주지사들은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지 않도록 사형이 선고된 모든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주지사 대표로 발언을 한 베누에췌 주지사 가브리엘 수스완은 회의가 끝날 무렵 이번에 내린 결정은 나이지리아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됐다.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권리 및 책임성 프로젝트(SERAP)로부터 개별통보(Communication)를 받은 후 800여명의 사형수들이 제출한 청원을 심의할 때까지 주지사들이 사형집행을 재개할 수 없도록 임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률자원콘소시엄(LRC)과 '법적 변호 및 지원 프로젝트'(LEDAP)는 나이지리아 모든 사형수를 대표해 연방고등법원에 두 건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집행정지 명령을 내려 36명의 주지사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았다. 이 명령은 SERAP의 개별통보와 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내려진 조치이다. 2010년 나이지리아에서 최소 151명에게 사형이 추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소말리아**에서는 최소 8명이 처형당했고, 8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⁴⁷ 소말리아 내 자치구역인 폰트랜드에서만 최소 7명이 사형당하고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으며, 소말리랜드에서 두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10년 12월 소말리아 과도연방정부는 누르 아흐메드 쉬레를 처형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과도연방정부가 실시한 첫 사형 집행이다. 소말리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01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의 세번째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소말리아는 비슷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2008년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2010년 **수단**에서 최소 6명이 처형당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3명의 경찰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인데, 상당한 압박 하에 "자백"하도록 강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무장 재야 세력인 '정의평등운동'과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 7월과 2010년 1월 사이 특별 대테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106명 중 50명이 조건 없이 석방됐다. 피의자들은 2008년 카르툼에서 발생한 공격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불공정한 재판에서 고문을 통한 강제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말 기준 8명의 미성년 범죄자를 포함해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106명의 피의자 중 한 명인 아흐메드 술레이만 술만은 2009년 10월 수감 중 결핵으로 사망했다.

10월 21일 다르푸르 특별 법원은 남부 다르푸르에서 정부가 호위하는 수송대를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에게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한 명은 어린 아이인 것으로 확인되어 형이 감형됐다. 2010년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엘파시르 지역의 압둘라하만 자카리아 모하메드가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 2009년에 처형당했다.

탄자니아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여전히 선고되고 있으며, 정부는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공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8년 세개의 현지 단체가 법원에 사형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했는데, 현재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심의 중이다.

동성애금지법안이 2010년 말 현재 **우간다** 의회에 상정된 상태인데, 법제화될 경우 "가중된" 동성애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우간다는 계속 사형을 계속 선고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공식 수치에 따르면, **잠비아**에는 267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2010년 동안 35명에게 사형이 추가 선고됐다. 2010년 중 36명의 사형수가 감형을 받았고, 3명은 사면됐다. '므응곰바 헌법 검토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많은 사람들이 헌법안에서 사형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비아 전국제헌회의(National Constitutional Conference) 지난 2010년 2월 3일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헌법안을 대국민 토론에 부치겠다고 결정했다. 3월 10일 자유권위원회는 잠비아가 몽구왓부토 카브웨 피터 음왓바 사건에서 사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해 자유권규약 당사국으로서의 국제 인권 의무를 저버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본 사건에서 피의자의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그로 인해 고문 혹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밝혔다.⁴⁸

2010년 **짐바브웨**에서는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하라레 중앙 교도소의 노르베르트 초무렝가 소장이 상원 인권위원회에 제공한 수치로 볼때 2010년 3월 현재 사형수의 수는 49명이다.

2010년 말 현재, 베냉, 가나, 시에라리온과 짐바브웨가 개혁을 추진 중이다. 2010년 동안 모리타니아와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적 사형 반대 연대체를 구성했다. 2010년 말 현재 2007년에 발의된 사형 폐지 법안이 말리 의회에 계류 중이며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부록 I: 2010년 보고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현황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 숫자가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어떤 국가는 의도적으로 사형제도 관련 사법 절차를 은폐하며 또 어떤 나라는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라 이름 뒤 숫자와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숫자가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숫자 없이 "+"만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한 건 이상) 사형을 선고했거나 집행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2010년 보고된 사형집행 현황(총 23개국, 최소 527건 이상)

바레인 (1), 방글라데시 (9+), 벨라루스 (2), 보츠와나 (1), 중국 (1000s), 이집트 (4), 적도 기니 (4), 이란 (252+), 이라크 (1+), 일본 (2), 리비아 (18+), 말레이시아 (1+), 북한 (60+),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5), 사우디아라비아 (27+), 싱가포르 (+), 소말리아 (8+), 수단 (6+), 시리아 (17+), 대만 (4), 미국 (46), 베트남 (+), 예멘 (53+)

2010년 보고된 사형 선고 현황(총 67개국, 최소 2,024건 이상)

아프가니스탄 (100 +), 알제리 (130+), 바하마 (5+), 바레인 (1), 방글라데시 (32+), 바베이도스 (1), 벨라루스 (3), 베냉 (1+), 브루나이 다루살람 (+), 부르키나파소 (1+), 카메룬 (+), 중국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4), 차드 (1), 콩고민주공화국 (+), 이집트 (185), 적도 기니 (4), 에티오피아 (5+), 감비아 (13), 가나 (17), 과테말라 (1), 가이아나 (1+), 인도 (105+), 인도네시아 (7+), 이란 (+), 이라크 (279+), 자메이카 (4), 일본 (14), 요르단 (9), 케냐 (5+), 쿠웨이트 (3+), 라오스 (4), 라이베리아 (11), 레바논 (12+),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2+), 말레이시아 (114+), 말라위 (2), 몰디브 (1), 말리 (14+), 모리타니아 (16+), 모로코/서사하라 (4), 미얀마 (2), 나이지리아 (151+), 북한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11+), 파키스탄 (365), 사우디아라비아 (34+), 시에라리온 (1), 싱가포르 (8+), 소말리아 (8+), 대한민국 (4), 스리랑카 (+), 수단 (10+), 시리아 (10+), 탄자니아 (5+), 대만 (9), 태국 (7+), 트리니다드토바고 (+), 튀니지 (22+), 우간다 (5+), 아랍에미리트 (28+), 미국 (110+), 베트남 (34+), 예멘 (27+), 짐바브웨 (8), 잠비아 (35).

부록 II: 2010. 12. 31. 현재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현황

전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법적·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사형폐지국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96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9
사실상 사형폐지국: 34
법적·사실상 사형폐지국 수의 총 합계: 139
사형존치국: 58

다음은 각 4가지 범주(모든 범죄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사실상 사형폐지국, 사형존치국)에 속하는 국가 목록을 나열한 것이다.

1.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브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바티칸,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마셜군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르코네시아 연방,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코소보 포함),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토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주엘라

2.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법률상 사형이 군법이나 예외적 상황에서와 같이 예외적 범죄에 한해 존재하는 국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피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페루

3. 사실상 사형폐지국

살인 등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나 관행을 수립한 국가

알제리, 베냉,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공화국, 에리트레아, 감비아, 가나, 그레나다, 케냐,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⁴⁹, 한국,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란드,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잠비아

4. 사형존치국

일반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안티카 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보츠와나, 차드, 중국,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니제르, 북한,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카타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트남, 예멘, 짐바브웨.

부록 III: 2010. 12. 31. 현재 사형제도 관련 국제조약 비준 현황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한 4 개의 국제조약이 국가 공동체들에 의해 채택되어 있다. 1 개는 전지구적인 조약이며, 다른 3 개는 지역적 협약이다. 아래는 각 조약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당사국과 서명국 현황이다. (국가는 가입이나 비준을 통해서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서명은 후에 비준을 통해서 당사국이 되겠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국가들은 국제법상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의 조항을 존중하고 자국이 서명한 조약의 목적과 목표를 파기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

1989년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된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는 전세계를 포괄하는 조약이다. 이 의정서는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준이나 가입시 유보를 통해서 당사국에 전시에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에쿠아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로마니아, 르완다,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주엘라 (총 73 개국)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 기니비사우, 폴란드, 상투메프린스페(총 3 개국)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1990년 미주기구 총회가 채택한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정서의 비준이나 가입시 유보를 통해서 당사국에 전시에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주인권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총 11 개국)

유럽인권협약 제 6 의정서

1982년에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된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유럽인권협약) 제 6 의정서는 평시에 모든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전시나 즉각적인 전쟁의 위협이 있는 시기"에 한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총 46 개국)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 러시아 (총 1 개국)

유럽인권협약 제 13 의정서

2002 년에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된 모든 상황에 있어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유럽인권협약) 제 13 의정서는 전시나 즉각적인 전쟁의 위협이 있는 시기를 포함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로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총 42 개국)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는 국가: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총 3 개국)

부록 IV: 2010. 12. 21.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5/206호에 대한 표결 결과

2010. 12. 21.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5/206 호의 공동제안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브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몰타, 마셜군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연방,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로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터키,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아일랜드,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주엘라 (총 90 개국)

찬성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⁵⁰,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군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연방,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토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주엘라 (총 109 개국)

반대

아프가니스탄, 안티카 바부다,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미국, 예멘, 짐바브웨 (총 41 개국)

기권

바레인, 벨라루스,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에리트레아, 피지, 가나, 기니, 요르단, 케냐,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로코/서사하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 군도, 대한민국, 수리남, 탄자니아, 태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잠비아 (총 35 개국)

불출석

베냉⁵¹, 차드,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모리셔스, 세이셸, 튀니지 (총 7 개국)

미주

¹ 국제앰네스티는 오만이 2009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보를 2010년에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3월 "2009 사형선고와 사형집행(문서번호: ACT 50/001/2010)"의 발표 당시에는 이 정보를 알 수 없었다.

² 가자 지구의 사실상 정부인 하마스에 의해서

³ 참조: 유엔 문서 번호 CCPR/C/98/D/1520/2006.

⁴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65/280.

⁵ 참조: 유엔 문서 번호 E/2010/10.

⁶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19.

⁷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 para6, 1982년 7월 27일 채택

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 para7, 1982년 7월 27일 채택

⁹ 결의 1999/61호, 2004/67호

¹⁰ 결의 2002/77호

¹¹ 결의 2005/59호

¹² 수단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79/Add.85, para8, 1997년 11월 19일.

¹³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아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79/Add.101 para8, 1998년 11월 6일, 위원회는 또한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이 적용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¹⁴ 쿠웨이트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O/69/KWT para13, 2000년 7월 27일.

¹⁵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79/Add.101 para8, 1998년 11월 6일.

¹⁶ 케냐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O/83/KEN, para13, 2005년 4월 29일.

¹⁷ 과테말라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O/72/GTM, para17, 2001년 8월 27일.

¹⁸ 수단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79/Add.85, para8, 1997년 11월 19일.

¹⁹ 쿠웨이트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O/69/KWT para13, 2000년 7월 27일; 베트남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O/75/VNM, para7, 2002년 7월 2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O/72/PRK, para13, 2001년 8월 27일.

²⁰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문서 E/CN.4/1999/39, para63, 1999년 1월 6일.

²¹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5/Add.1.

²² 페루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유엔 문서 CCPR/C/79/Add.67; 유엔 인권위원회(CHR)결의 2005/59호;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1993 보고서 E/CN.4/1994/7. 미주인권협약 4조 2항은 사형의 적용이 "현재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4조 3항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다시 사형제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²³ 참조: 유엔 문서 번호 CRC/C/NGA/CO/3-4.

²⁴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L.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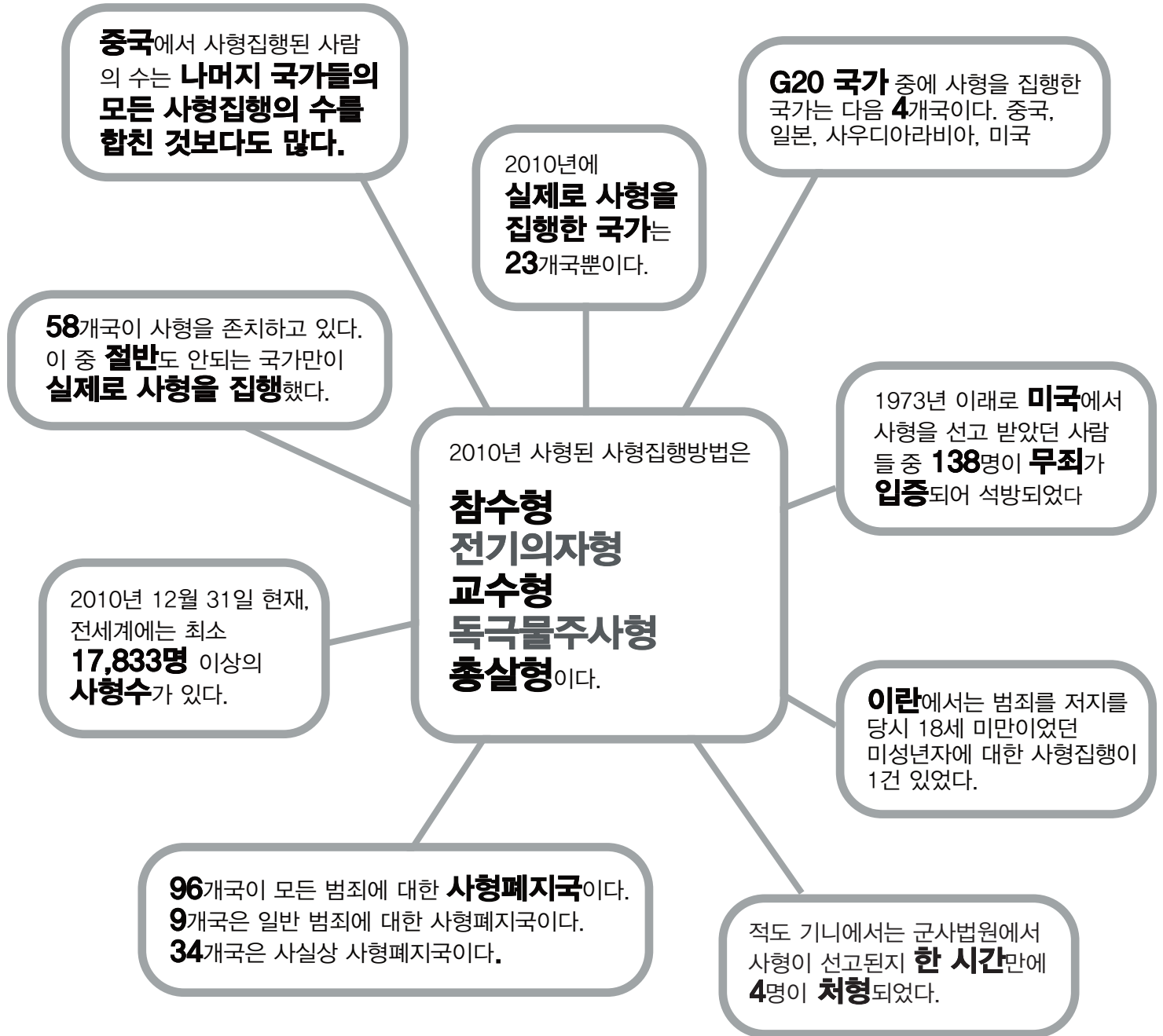
²⁵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WG.6/9/L.12.

²⁶ 참조 "Justice Stevens: An open mind on a changed court", NPR, 2010년 10월 4일, <http://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130198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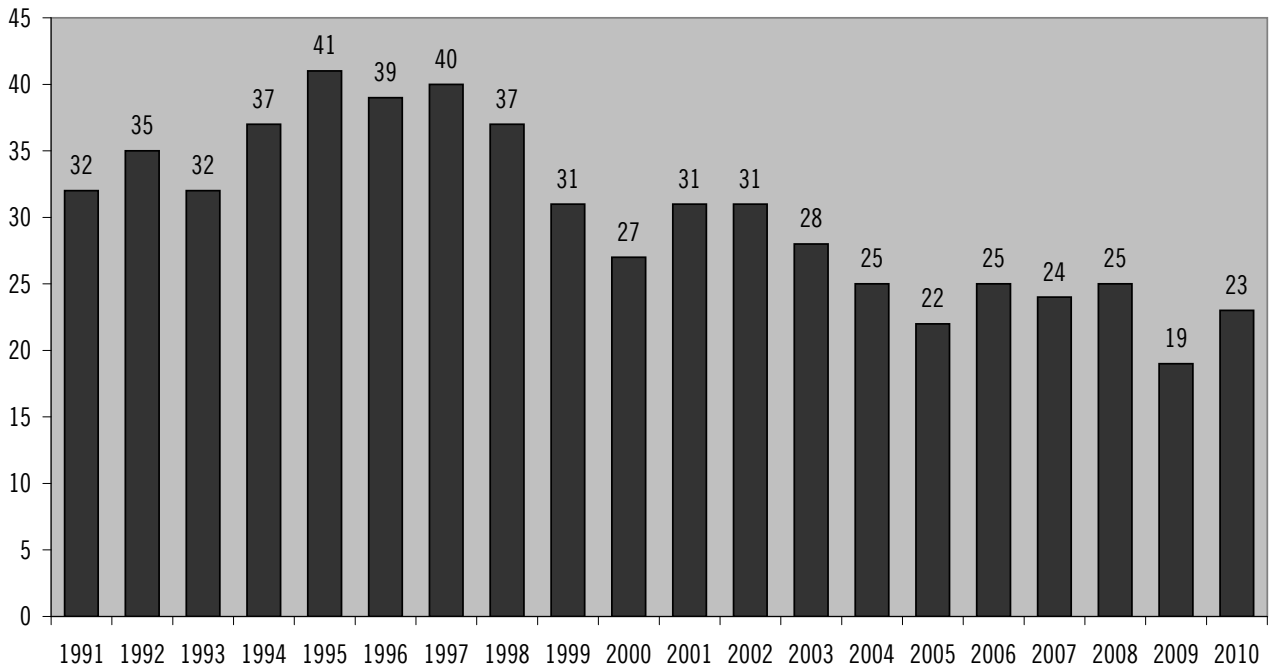
²⁷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미합중국의 응답, 2010년 11월 9일, <http://www.state.gov/s/l/releases/remarks/150677.htm>

- ²⁸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WG.6/9/L.9.
- ²⁹ 호스피라는 후에 소디움 티오펜넬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 ³⁰ 이 형법은 2011년 2월 채택되었다.
- ³¹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5.
- ³²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5/Add.1.
- ³³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WG.6/9/L.3.
- ³⁴ 2011년 1월 항소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연기했다.
- ³⁵ Taipei Times 2면, 2010년 10월 17일.
- ³⁶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16/Add.1.
- ³⁷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4/17.
- ³⁸ 이중 한 명에 대한 선고는 감형되었지만 2011년 1월 24일 두 명이 처형되었다. 이들에 대한 교수형은 2011년 1월 86명에 대한 이란 당국의 연이어 처형의 일부였다.
- ³⁹ 2011년 1월 6일, 한 비정부기구 활동가와 한 언론인이 석방되었다. 하지만 라피티 가족 중 체포되었던 이들 중 10명은 체포된 이후 최소 몇일에서 일주일까지 구금되어 있었다.
- ⁴⁰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65/370.
- ⁴¹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15.
- ⁴²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L.10.
- ⁴³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WG.6/8/KEN/1.
- ⁴⁴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5/7.
- ⁴⁵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WG.6/9/L.1.
- ⁴⁶ 참조: 유엔 문서 번호 A/HRC/14/13/Add.1.
- ⁴⁷ 이 수치는 보고된 알-샤밥 등의 무장반군단체가 간첩이나 이슬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개적으로 불법살해 건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⁴⁸ 참조: 유엔 문서 번호 CCPR/C/98/D/1520/2006.
- ⁴⁹ 러시아는 1996년 8월에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했으나 1996년과 1999년 사이에 체첸공화국에서 사형집행이 있었다.
- ⁵⁰ 감비아 대표단은 표결 후에 발언을 통해 원래 의도는 기권이었음을 밝혔다.
- ⁵¹ 2010년 11월 1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심의되고 있을 당시 베냉 대표단은 결의 초안 A/C.3/65/L.63의 수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제안 설명에서 수정안에 대한 정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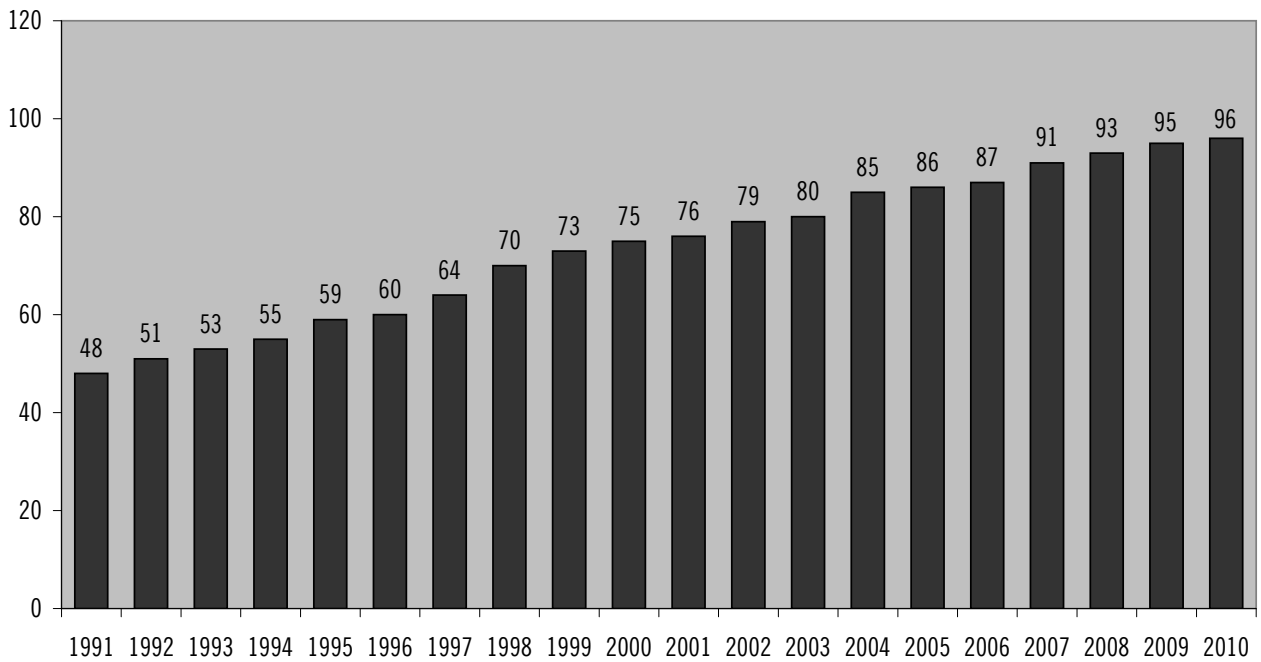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주목할 만한 사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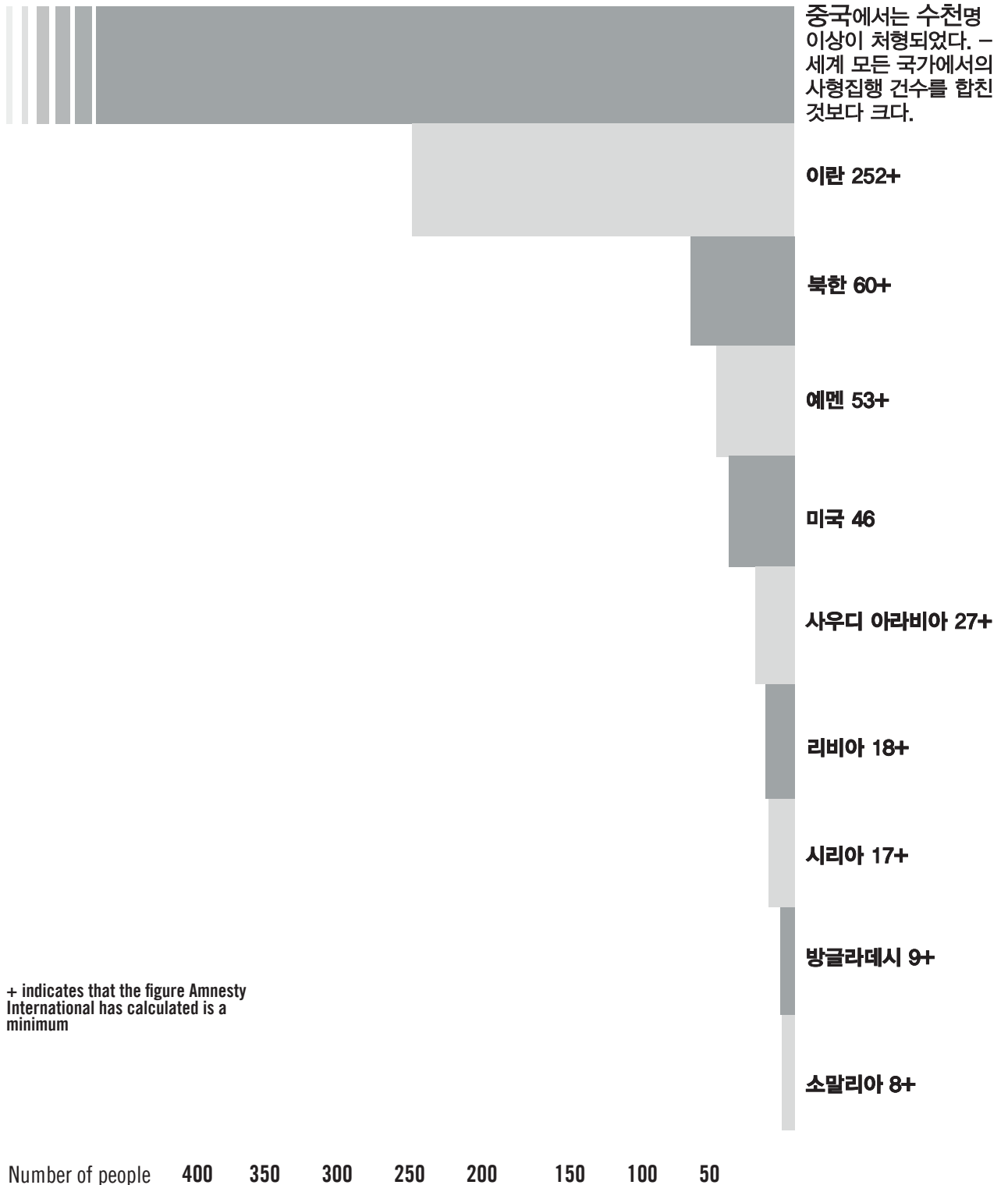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 199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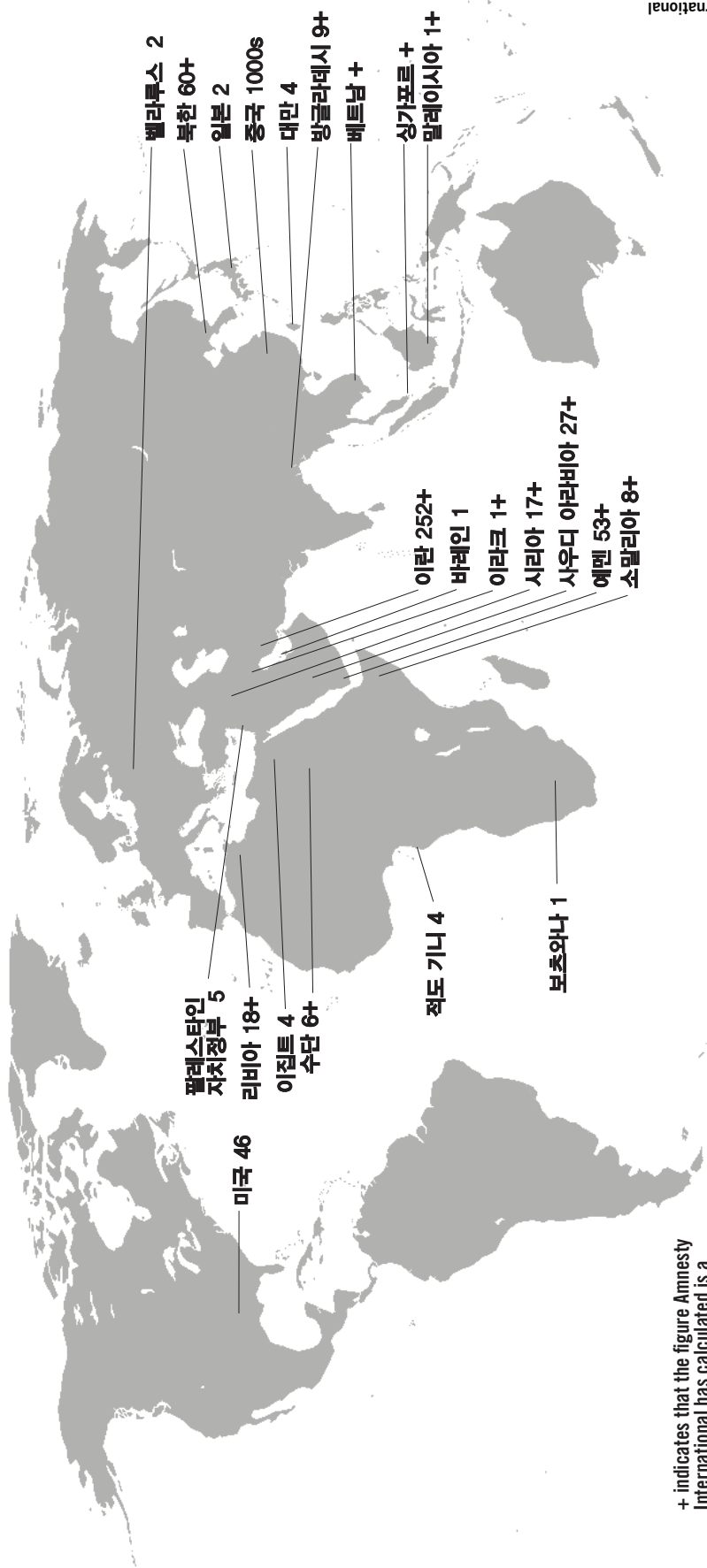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수의 추이 1991-2010



2010년 사형집행 건수가 많은 국가



2010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



+ indicates that the figure Amnesty International has calculated is a minimum. Where + is not preceded by a number, it indicates that there were executions (at least more than one) but that it was not possible to specify a figure.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지난 10년간 30개 이상의 국가들이 법률적 혹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현재 일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존치하는 국가는 58개국이며, 이 중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의 국가들만이 2010년에 사형을 집행했다.

2010년에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향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몽골 대통령이 1월에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으며 현재 몽골 의회에는 사형폐지법안이 계류 중이다. 2월에는 가봉이 사형을 폐지했다. 유엔의 전세계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다. 사형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왔던 국가에서도 사형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는 긍정적 움직임이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명백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들 중 많은 수가 국제법기준에 위반하여 사형을 집행했다. 비록 그러한 국가들이 국제인권기구들의 견해와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취합한 2010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수치를 담고 있으며 한 해 동안의 전세계적 사형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주요 발전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가해자의 특성,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amnesty.or.kr

Index: ACT 50/001/2011
March 2011

AMNESTY
INTERNATIONAL

